

**2025년도 부산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공고  
참고자료**

참고자료	서식명
참고자료 1	사업비 편성 항목(운영규정 별표2)
참고자료 2	부산형 RISE 기본계획 요약본
참고자료 3	부산형 RISE 기본계획 단위과제별 개요
참고자료 4	부산시 자율성과지표 산출식
참고자료 5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 규정(교육부훈령)
참고자료 6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전략(교육부)

항목	사용용도
인건비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교원 및 직원 등 인력의 인건비 비용(퇴직금, 4대 보험료, 보직수당, 성과급 포함) 2) 그 밖에 RISE사업 운영을 위한 조교 등 보조인력에 대한 보수
장학금	1) RISE사업 관련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자 보조금 2) RISE사업 관련 (전문기술)석사박사학위과정 학생 및 수료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자 보조금 3) RISE사업 관련 그 밖에 성인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 보조금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1)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비: 전공·비전공·교양 등 신규 교과목 개발, 신규 교재개발, 신규 강의법 개발 등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 2)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비: 정책연구비, 강의료, 원고료, 교육학술활동비, 실험실습비 등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국제화 경비: 국제화를 위한 교류 경비,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 국외 교육·연구 활동 관련 각종 경비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1) 강의실·실험실·실습실 등 RISE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연구공간에 대한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2) 시스템 구축 용역비 또는 시스템 관련 기자재 구입 등 RISE사업에 부합하는 교육·연구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교육·연구·산학협력 목적으로 활용되는 실험·실습·시험·분석·계측·생산장비 및 기자재의 구입·리스·임차·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지역 연계·협업 지원비	1) 기관 간 연계·협업 활동, 자산·학·연 정보 공유,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설계·운영 등 지자체 또는 지역 내(간) 기관과의 연계·협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문제 해결 등에 필요한 비용
기업 지원·협력 활동비	1) 산학공동 기술·지식 개발비: 산학 공동 기술·지식 개발 비용 2) 산학협력·직업평생교육활동비: 애로기술 및 컨설팅 지원, 재직자 교육, 융·복합 기술사업화 등 기업·지역·협력기관 지원 비용, 산학연계 공동 세미나·포럼 추진·참가비 또는 산학협력·직업평생교육협의체 운영비 등 산학협력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성과 활용·확산 지원비	1)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 DB 사용료 등에 필요한 비용 2) 기술이전·사업화 비용: 창의적 자산 발굴 및 기획비용, 산학공동 기술·지식 사업화 비용(시제품 제작 및 검증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비, 사업화 분석 및 투자유치, 대학협력기관 간 기술사업화 융·복합 프로그램 추진비, 학생 기술·지식 창업 프로젝트 비용 등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비용 3) 성과 공유·확산비: 세미나·포럼 개최비, 위원회 수당 등 자산·학·연 협력 성과 공유·확산을 위해 필요한 비용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여비, 교육활동지원비, 도서 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신규 채용인력 공개임용 시 필요 경비 등 RISE사업 관련 교육·연구·산학협력 등의 활동 수행 시 부가적으로 필요한 비용
간접비	교육연구단, 산학협력단 등 RISE사업의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



- 2030 글로벌 허브도시의 NEW WAVE를 만드는 부산형 RISE -

2025 ~ 2029년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본계획  
[요약]

# 목 차

I. 추진배경 .....	1
II. 현황분석 및 시사점 .....	2
III. RISE 정책 방향 .....	4
IV. 비전 및 목표 .....	7
V. 중점 추진 내용 .....	8
VI. 운영체계 .....	13
VII. 성과관리 계획 .....	14
VIII. 재정투자 계획 .....	16

# I. 추진배경

## □ 인구구조·산업구조 급변에 따른 지역-대학의 공동 위기 극복 필요

- (지역·대학 위기) 학령기 인구감소와 함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며 지역 대학의 존폐 위기와 지역의 소멸 위기가 공동으로 위기에 직면
  - 일자리, 생활 인프라 등 수도권과의 격차로 우수 인재 지역이탈 가속화
  - ※ 부산의 경우 청년유출은 지속적 감소세 유지와 고용률 개선\*으로 전환 시점 도래
  - \* 순유출 규모: ('19.) 11,846명 → ('21.) 7,262명 → ('22.) 6,152명 → ('23.) 5,943명
  - 청년 고용률: ('21.) 41.2% → ('22.) 42% → ('23.) 43.9% → ('24.9월) 46.7%
- (지역기반 산학연협력) 지역인재를 통한 지역발전 집중 방식으로 대학혁신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25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시행
  - \*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지역의 핵심 인적·물적자원 집약체인 대학이 협력적 동반관계를 구축하여 지역 혁신·발전을 이끄는 체계

## □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도약을 위해 대학의 지역발전 기능 강화

-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인재·자본·기술이 모여드는 대한민국 남부권 중추 도시로서의 부산시 위상 강화를 위한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추진
- (대학연계 지역발전)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대학 혁신역량 강화와 부산시-대학 상생발전체계 구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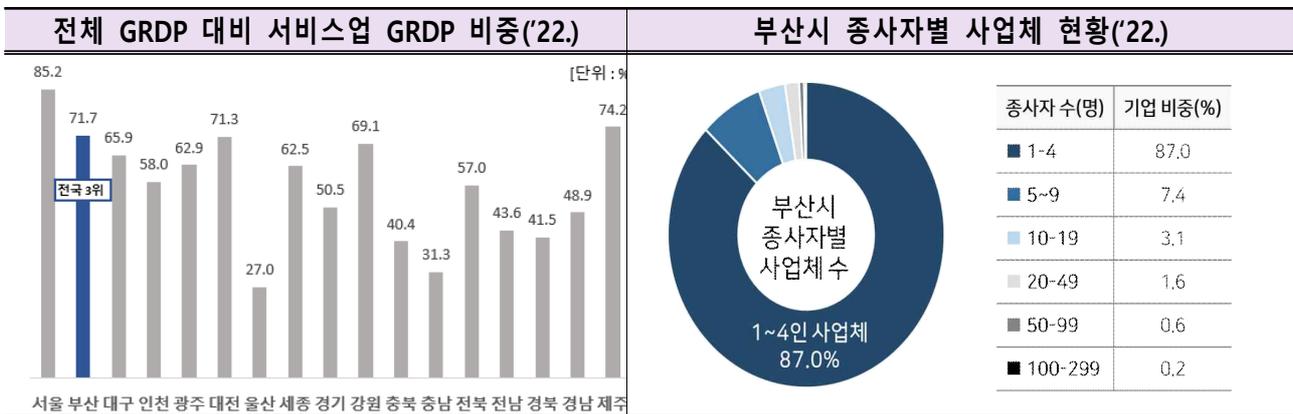
### 부산시-지역대학 연계·협력 강화



## Ⅱ. 현황분석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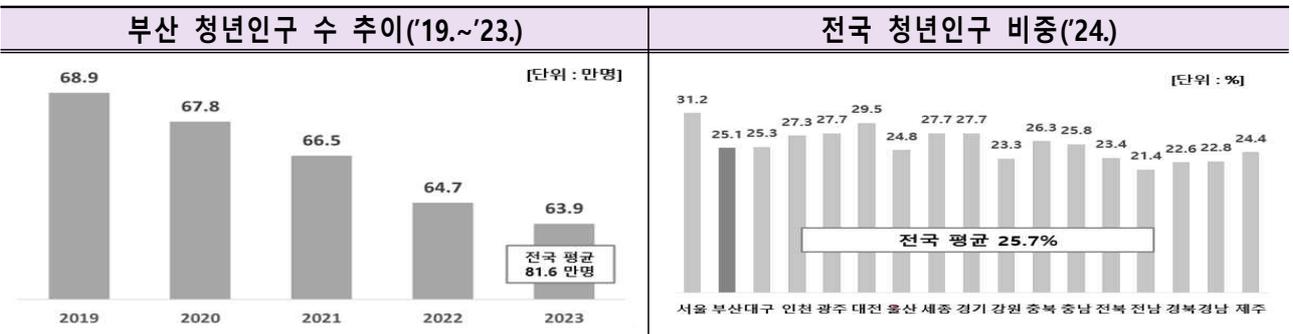
### □ 지역 산업·경제여건 분석

- (지역산업 위기) 부산지역 산업은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구조로 쇠퇴
  - 부산시 GRDP 중 제조업 비중 16.0%(전국 14위), 서비스업 비중 71.7%(전국 3위)를 차지('22.), 서비스업에 높은 의존도와 지역 중추산업 부재
- (대기업 부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심의 산업구조로 산업경쟁력 취약
  - 종사자 수 5인 미만 영세기업이 전체 사업체의 87.0%를 차지('22.), 매출액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은 '08년(55개)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여 '23년 기준 31개



\* 자료: 통계청(2022), 지역소득통계

- (지역소멸 위기) 저출생·고령화, 인구 유출에 의한 지속적 부산시 인구감소
  - 광역시 중 유일하게 초고령사회, 최초로 소멸 위험단계 진입('24.3월 기준)
- (청년 유출 심각) 우수 지역인재 역외 유출로 지역 도시경쟁력 약화
  - 청년인구는 63.9만명으로 지속 감소 추세이며('23.) 비중은 25.1%로 전국 평균 보다 낮은 수준('24.), 특히 20대 후반과 30대 전반의 청년인구 순유출이 심각



\*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 자료: 통계청(2024), 인구총조사 청년인구비율

- (인력수급 미스매치) 지역 청년실업난-기업구인난 가중 악순환
  - 부산시 산업기술인력 미충원율은 '22년 19.2%로 전국 16위인 최하위 수준이며, 구인인력 1,560명 중 299명의 미충원인력이 발생

## □ 지역고등교육 현황과 특성화 분석

- (대학 존폐 위기) 학령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대학 위기 심화
  - 부산시 지역대학은 총 22개교\*이며 대학생 수가 전국 3위로 많은 지역이나 ('22.), 최근 전국대비 대학생 수가 큰 감소세
    - \* 4년제 일반대 14개와 2·3년제 전문대 8개, 국립대 4개, 재적학생 1만 명 이상 대규모 대학 6개
- (대학 교육여건) 대학 간 사업수혜 규모 차이로 대학 재정 및 교육자원 격차
- (대학 특성화 중복) 바이오, 헬스케어, 문화 등 특정 산업으로 대학별 특성화 분야가 집중되어 대학 간 과다 경쟁 및 유사 사업추진 야기
- (대학 간 역량 편차)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기반으로 교육·연구·기술사업화·글로벌 부문 역량분석 결과, 대학별 역량의 강점과 약점을 상호 보완 필요
- (지역산업-학과 매칭) 산업기술 수준별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추진
  - 부산시 5대 신산업 모든 분야에서 3개 국립대와 동아대, 9대 전략산업 중 바이오 헬스, 라이프스타일, 문화관광산업이 전반적으로 지역대학과 높은 연계성

## □ 부산시 지산학협력 및 청년정책 추진현황

- (부산 지산학협력 종합계획) 전국 최초 ‘지역 지산학협력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23.4월), 5년간 4대 전략 97개 사업 총 1조 993억원 중 시비 3,156억원 투자

### [ 부산 지산학협력 5년 단위('23.~'27.) 종합계획 ]

지산학협력 지원체계 구축	기술혁신 지원	지역인재 양성	대학혁신 유도
지산학협력센터 운영, 지산학통합e플랫폼 등 28개 사업 	개방형연구실 지원, 대학R&D세앗기획 등 25개 사업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기술사관학교 등 24개 사업 	기술사업화 혁신플랫폼, RIS 등 20개 사업 
37,870백만원(시비)	92,818백만원(시비)	77,257백만원(시비)	107,638억원(시비)

- (부산시 인재육성사업) '24년 현재 부산시는 총 61개 사업(1,154.3억원)을 통해 31,236명 인재육성, 그 중 기업수요기반 인재육성은 19개 사업 4,654명 지원
- (부산시 청년정책)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으로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에 청년이 핵심이 되도록 일자리, 주거, 교육 등 5개 분야 5년간 총 1조 9,092억원 투자

### 시 사 점

- (대학유형별 특화 발전) 대학별 특화(역량·역할·특성화)로 경쟁력 확보 시급
- (산업수요형 인재양성) 지역산업에 기반한 미래 맞춤형 인재양성 필요
- (개방·혁신형 산학연협력) 개방혁신 캠퍼스 기반 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지역기여형 문제해결) 지역 현안 해결, 평생교육 등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강화
- (대학 자율혁신)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대학 혁신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

### Ⅲ. RISE 정책 방향

#### □ 부산형 RISE 추진 방향

- 첫째, 부산지역 발전정책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지원
  - ⇒ 부산시 5대 신산업 및 9대 전략산업을 포함한 인문·사회·예술기반 융·복합 분야와 지역대학 특성화 분야 연계 강화
- 둘째, 지역대학별 역량·역할에 따른 특화 발전 도모
  - ⇒ 3개 대학유형화(연구중심형, 교육중심형, 직업·평생교육중심형 대학)를 통한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 부문에서의 대학별 특화된 과제 추진
- 셋째, 대학별 bottom-up, 공동기획(Co-design) 방식의 자율적 지역혁신과제 기획·추진
  - ⇒ 대학별 선택과 집중에 의한 4대 프로젝트 및 12개 단위과제 추진으로 자율적 대학혁신 적극 지원
- 넷째, 부산형 RISE 대표모델 구축(시그니처 과제)을 통한 지역 내 성과 확산
  - ⇒ 부산형 Open UIC 조성을 통한 지역기반 쌍방향·개방형 협력생태계 구축
- 다섯째, 범부처 연계·협업 확대로 RISE 성과 제고
  - ⇒ 부산지역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의 선순환 체계 강화



#### [ 부산형 RISE 추진전략: 4대 프로젝트 ]

프로젝트 ①	프로젝트 ②	프로젝트 ③	프로젝트 ④
미래인재 확보를 위한 Human-Wave [인재혁신]	산업고도화를 위한 Industrial-Wave [산업혁신]	지역가치 확산을 위한 Social-Wave [사회혁신]	대학 대전환을 위한 University-Wave [대학혁신]

#### [ 부산형 RISE 실천전략: 3개 대학유형화 ]

연구중심형대학	교육중심형대학	직업·평생교육중심형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산업 선도 연구인재 육성</li> <li>• 신기술 혁신 산학공동 연구개발</li> <li>• 대학 기술기반 창업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산업 실무인재 양성</li> <li>• 특화분야 산학공동연구 및 기술사업화</li> <li>• 대학발 창업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li> <li>• 산업현장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li> <li>• 지역정주 실천창업 지원</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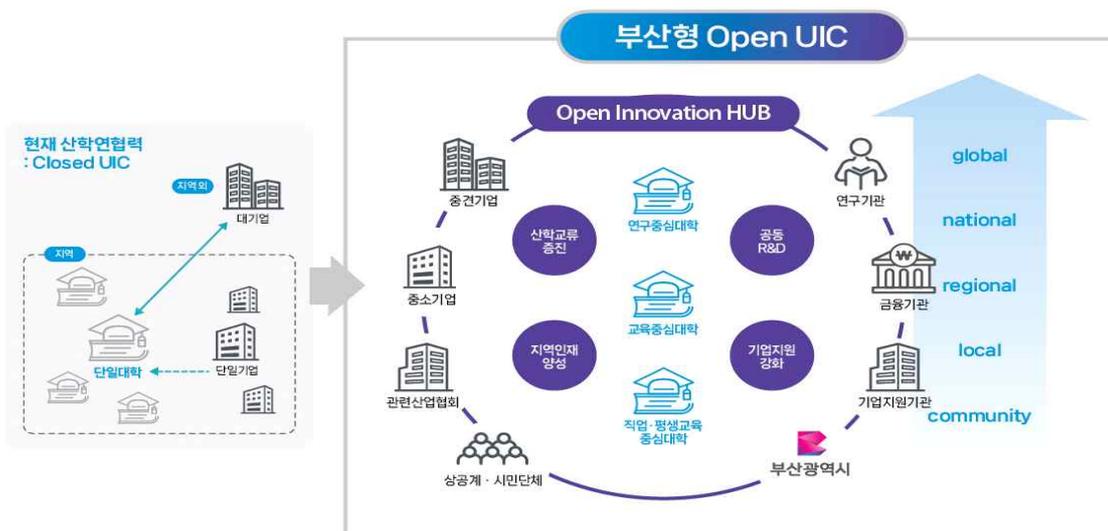
#### [ 부산형 RISE 사업 추진 방법 ]

기본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 ① 인재혁신, 프로젝트 ② 산업혁신: 3개 대학유형별 수행</li> <li>• 프로젝트 ③ 사회혁신, 프로젝트 ④ 대학혁신: 대학 자율선택</li> </ul>
대학단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과제별 공모 방식 지양, 대학이 수행할 단위과제들을 패키지로 선택하여 대학별 하나의 사업계획 수립</li> </ul>

## □ 부산형 RISE 대표모델(시그니처 과제)

- (필요성) 중소·중견기업, 서비스산업 중심의 부산시 경제·산업현황 및 대학별 역량역할에 따른 고등교육 체제 특성\*에 기반한 부산지역대학 지원 방안 필요
  - \* 연구중심형대학, 교육중심형대학, 직업·평생교육중심형대학
- (대표모델) 글로벌인재 허브도시를 위한 부산형 Open UIC\* 조성
  - \* UIC,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 ‘Open UIC’ 는 대학의 폐쇄성을 벗어나 개방적 협력을 통해 ‘대학이 지역 속으로’ 들어가 산업현장 및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 ‘부산형 Open UIC’ 는 유형별 지역대학이 Open Innovation HUB가 되어 지역 혁신 주체와 협력생태계를 조성, 지역사회부터 글로벌까지 다양한 동반성장 체계 구축

### 부산형 Open UIC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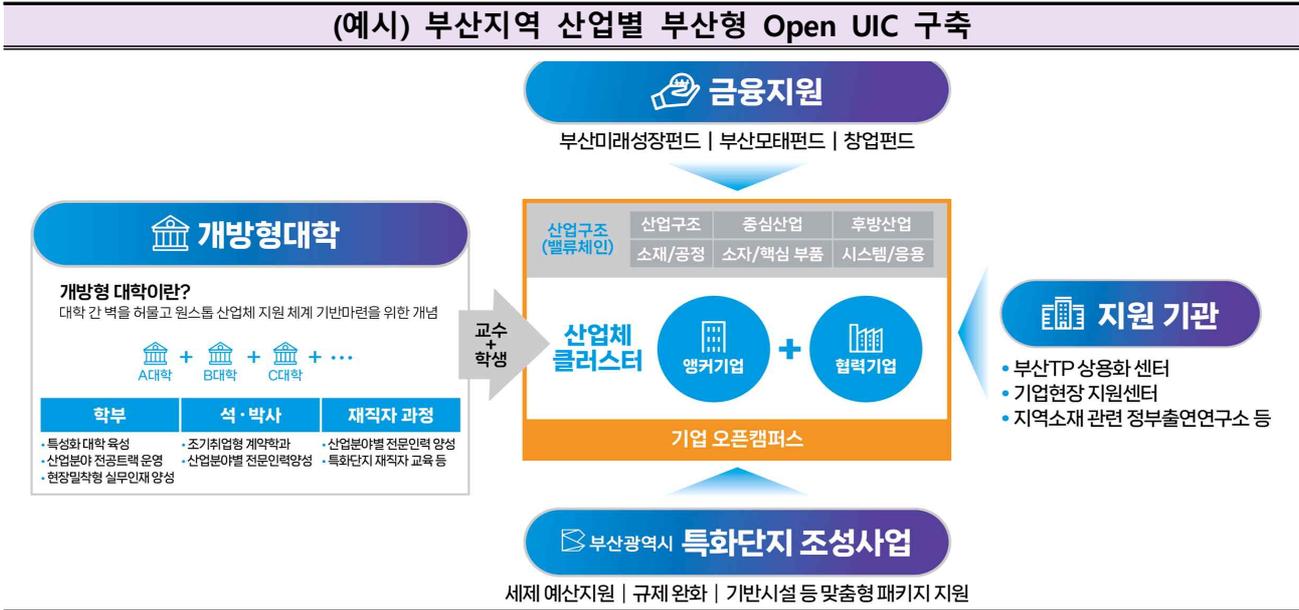


- 부산형 RISE를 통해 조성되는 부산형 Open UIC는 대학이 개방형 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역기반 특화 지·산·학·연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의 신성장동력 창출

#### [ 중소·중견기업 중심 부산형 Open UIC 지·산·학·연 협력 모델 특징 ]

구분	Closed UIC : 현재 산학연협력 모델	부산형 RISE	부산형 Open UIC
협력대상	대기업 중심		중소+중견기업 클러스터
협력방식	1:1 협력 (단일대학/학과/교수 : 단일 기업)		종합 연계형 협력 (개방형 대학연합 + 산업클러스터 + 특화단지 + 금융기관 + 지원기관)
협력기반	대학 기반 (기업이 대학 방문 위주 방식)	▶	산업현장 기반 (대학이 기업현장 속으로, 기업 캠퍼스 구축)
협력내용	극히 제한적 (One point solution 중심) (예) 문제해결자문 or 교육 or 실습 등		체계적·종합적 협력 (예) 참여기업들 중심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 재교육, 현장실습·인턴십 등

- (추진내용) 5대 신산업 및 9대 전략산업별 지·산·학·연 협력기반 혁신클러스터 구축
    - ① 지역산업연계 대학교육 강화를 통한 지역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② 중견·중소·벤처기업과의 시장친화적 산학연협력을 통한 지역기업 혁신역량 제고
    - ③ 대학발 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창업생태계 기반 조성
    - ④ 기관 간 산학연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부산형 지·산·학·연 협력 촉진
- \* 부산라이즈얼라이언스(BRA) 출범(31개 기관 참여, '24.12.16.기준)



- (성과지표) ‘부산형 Open UIC 지수’ 정량지표 개발 및 우수 사례 발굴
  - 부산형 RISE를 통해 지역대학의 지·산·학·연 협력 역량을 정량화한 지표로 부산형 Open UIC 지수 개발, 5년간 연평균 8.2% 증가를 목표로 설정
  - ‘지역산업기반 지·산·학·연 협력 개방성’ 을 정성평가 지표로 하여 부산지역 5대 신산업 및 9대 전략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우수 사례 창출

**[ 부산형 Open UIC 지수 목표 ]**

구분	기준값*	중간평가(2년) 목표치	종합평가(5년) 목표치	비고
부산형 Open UIC 지수	100	117	148	연평균 8.2% 증가

\* 기준값은 '23년도 실적에 따른 지표 산출 결과를 100으로 설정

**[ 부산형 Open UIC 지수 산출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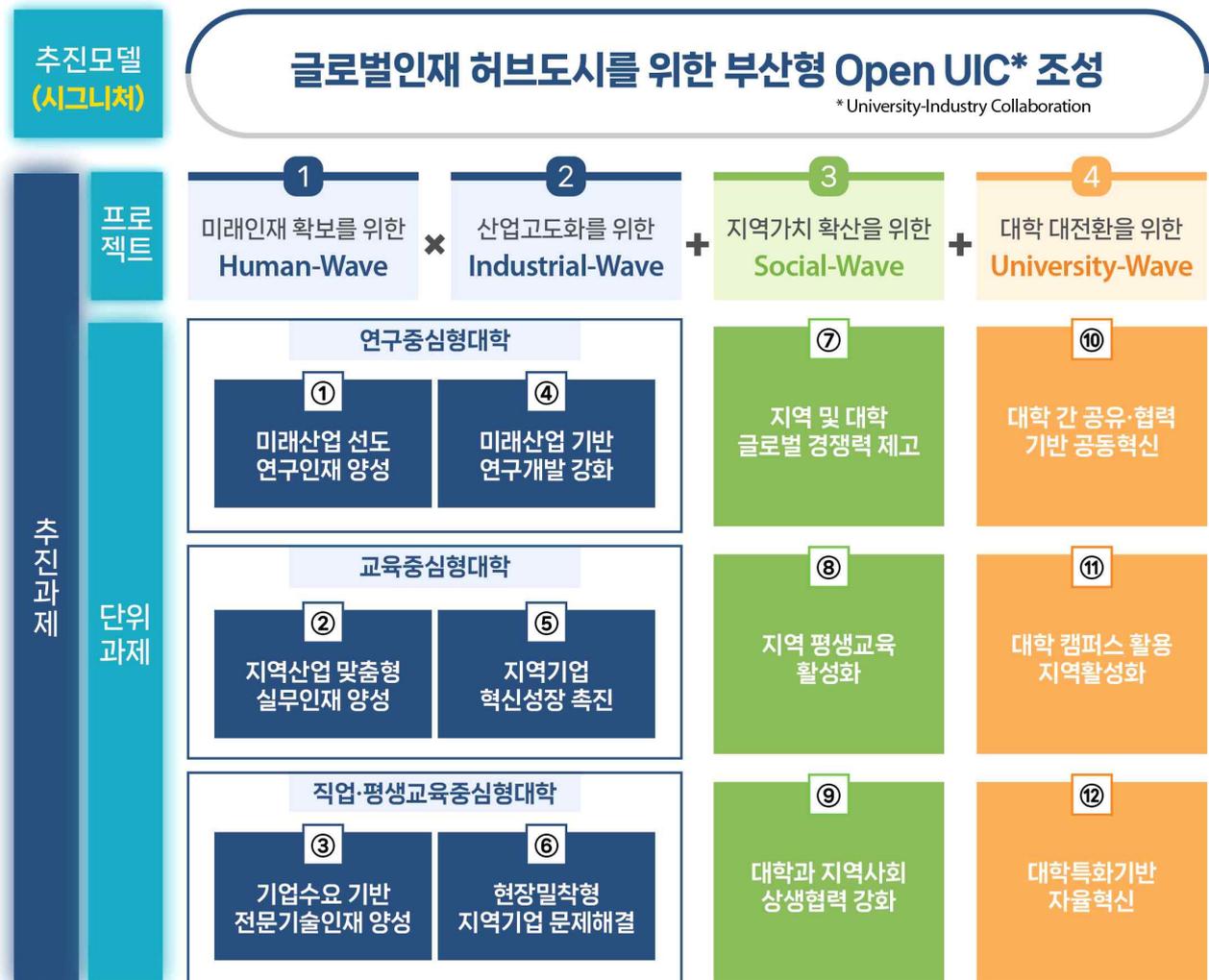
구분	가중치	측정 방식
산출식		부산형 Open UIC 지수 = 0.4 × A + 0.3 × B + 0.3 × C
A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연계 교육과정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현장실습, 계약학과, 주문식 교육과정의 참여학생 수</li> </ul> </li> </ul>
B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연협력 프로젝트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민간, 외국 연구비 금액(교내 및 중앙정부 연구비 제외)</li> </ul> </li> </ul>
C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창업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교육과정(교과·비교과) 참여학생 수</li> </ul> </li> </ul>

\* [자료 출처] 대학별 대학정보공시 제출자료 활용

# IV. 비전 및 목표

비전	2030 글로벌허브도시의 NEW WAVE를 만드는 부산형 RISE			
목표	"부산과 함께 도약하는 대학, 세계로 비상하는 부산"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지산학혁신생태계 구축			
추진전략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미래인재 육성 <b>인재혁신</b>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및 신성장동력 확보 <b>산업혁신</b>	대학 지역사회공헌 및 지속가능한 발전 <b>사회혁신</b>	대학 안팎의 벽 허물기를 통한 상생발전 <b>대학혁신</b>

## 추진 과제



## V. 중점 추진 내용

### 프로젝트 ① 미래인재 확보를 위한 Human-Wave

#### □ 프로젝트 목적

- (지역주도 체계적 인력양성) 지·산·학·연 협력으로 부산시 지역 여건, 산업 구조, 기술 수준을 고려한 체계적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 (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대학의 특성화 및 강점을 살리는 고등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연계 및 지역 정주
- (지역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산업현장기반 교육과정 강화를 통한 지역대학-산업간 인적자원 미스매치 해소 및 정주 취업률 향상

#### □ 프로젝트 기본방향

- (산업연계·현장기반 교육혁신) 산업현장기반 교육과정 개편·고도화를 통해 지역 기업 문제해결 및 학생역량 강화

#### 산업연계·현장기반 교육혁신

- ① 학습방법 다양화 : PBL(Problem Based Learning), 플립러닝(Flipped-Learning), 블렌디드러닝(Blended-Learning),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등
- ② 산업현장교육 고도화 : 표준현장실습, 인턴십, 일경험, 직무체험, 기업탐방 등
- ③ 취업연계교육 활성화 : 주문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

#### [ 프로젝트 ① 인재혁신 기본방향 ]

지역기업 문제해결

+

학생역량 강화

연구중심형대학	교육중심형대학	직업·평생교육중심형대학
• 신산업 수요기반 산학연구·교육	• 지역전략산업연계 실무교육	• 지역특화산업연계 전문기술교육



#### 산업연계·현장기반 교육혁신

학습방법 다양화·산업현장교육 고도화·취업연계교육 활성화

## □ 프로젝트 추진목표

[추진성과]	<현황>		<목표('29)>
지역혁신 인재양성	산업기술인력 미충원율 19.2%	▶▶▶ 매년 1.6%p 감소	산업기술인력 미충원율 11.3%
대학창업 활성화	연간 학생·교원창업자 수 124명	▶▶▶ 연평균 3% 증가	연간 학생·교원창업자 수 144명
청년 지역정주 증가	대학 졸업생 지역정주 취업자 10,519명	▶▶▶ 연평균 1% 증가	대학 졸업생 지역정주 취업자 11,056명

## □ 단위과제별 추진 내용

단위과제	추진 내용	
① 미래산업 선도 연구인재 양성	가. 수요기반 공동R&D를 통한 연구인재 육성 나. 산·학·연 협력생태계 구축을 통한 고급인재 정착 지원 다. 대학 기술기반 창업생태계 조성	연구 중심형 대학
② 지역산업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	가. 산업계 연계 교육과정 혁신기반 역량 강화 나. 지역 주력산업 실무인재 취업·정주 지원 다. 대학 창업교육 고도화로 지역 창업인재 육성	교육 중심형 대학
③ 기업수요 기반 전문기술인재 양성	가. 지역 특화산업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 나. 지역 특화산업 직업교육 고도화 다. 지역가치 기반 창업인재 육성	직업·평생 교육 중심형 대학

## 프로젝트 ② 산업고도화를 위한 Industrial-Wave

### □ 프로젝트 목적

- (대학기반 지역 혁신성장 동력 확보) 지역대학 보유 우수한 지적·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산업체와 공유·활용하여 지역 혁신역량 강화
- (지역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지역의 다양한 혁신주체 간 지·산·학·연 협력으로 개방형 혁신 및 협업 촉진, 지속적인 지역산업 발전 도모
- (지역연계 대학창업 활성화) 지역에 특화된 대학의 창업교육과 지원으로 혁신 창업인재 발굴·양성, 지역창업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 프로젝트 추진목표

[추진성과]	<현황>		<목표('29)>
지역산업 신성장 동력 확보	특허 등록 및 출원 건수 2,746건	연평균 2% 증가	특허 등록 및 출원 건수 3,032건
지역기업 혁신성장 촉진	연간 대학 기술이전 수익 66.7억	연평균 8% 증가	연간 대학 기술이전 수익 100억
지역기업 사업전환 지원	산업자문활동 건수 444건	연평균 5% 증가	산업자문활동 건수 515건

### □ 단위과제별 추진 내용

단위과제	추진 내용	
④ 미래산업 기반 연구개발 강화	가.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학·연 R&D 활성화 나. 대학 R&D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 강화 다. 대학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지원	연구 중심형 대학
⑤ 지역기업 혁신성장 촉진	가. 산업수요 기반 공동R&D 고도화 나. 지역기업(수요)-대학(공급) 간 기술협력 확대 다. 대학발 혁신창업 저변 확대	교육 중심형 대학
⑥ 현장밀착형 지역기업 문제해결	가. 지역기업연계 산학공동기술개발 촉진 나. 중소기업현장 맞춤형 문제해결 지원 다. 지역정주 실전창업 지원체계 구축	직업·평생 교육 중심형 대학

## 프로젝트 3 지역가치 확산을 위한 Social-Wave

### □ 프로젝트 목적

- (지역문제해결)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으로 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및 대학-지자체-기업-시민 연계 지역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 상생발전 도모
- (지역상생 및 활성화) 대학 보유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우수한 글로벌 인재 확보,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육 체계 및 교육과정 운영, 지역 현안 해결 등 시민과 공존하는 생태계 구축

### □ 프로젝트 추진목표

[추진성과]	<현황>	<목표('29)>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연간 외국인 유학생 수 11,313명	연평균 28% 증가 연간 외국인 유학생 수 38,557명
평생교육 활성화	성인학습자 평생교육 참여율 -	연평균 2% 증가 성인학습자 평생교육 참여율 10% 상향
대학연계 지역현안해결	인문사회예술기반 지역현안해결 프로그램 수 -	연평균 17% 증가 인문사회예술기반 지역현안해결 프로그램 수 100건

### □ 단위과제별 추진 내용

단위과제	추진 내용	
⑦ 지역 및 대학 글로벌 경쟁력 제고	가.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육성 나. 외국인 주민 맞춤형 지원 강화 다. 대학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전체 지역 대학
⑧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	가. 성인학습자 수요 기반 평생교육 체제 고도화 나. 소외계층 대상 평생학습 및 적정기술 개발 지원	
⑨ 대학과 지역사회 상생협력 강화	가. 사회문제 해결형 리빙랩 프로젝트 운영 나. 부산 활력-Up 프로그램 운영 다. 대학의 사회공헌 확대	

## 프로젝트 ④ 대학 대전환을 위한 University-Wave

### □ 프로젝트 목적

- (대학자율성장) 대학의 안팎의 벽 허물기, 대학 캠퍼스 활용 전환, 대학 간 공유·협력, 대학 간 연계 활성화 등 대학의 자율적 전환 유도
- (대학경영혁신) 대학 스스로 미래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 창출 및 대학 운영 방법 혁신 유도

### □ 프로젝트 추진목표

[추진성과]	<현황>		<목표('29)>
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	대학 간 교육과정 운영 8건	연평균 10건 증가	대학 간 교육과정 운영 50건
캠퍼스 내 지역혁신 거점 활용	대학 내 신규 입주기업 수 -	연평균 50개 증가	대학 내 신규 입주기업 수 누적 300개사
대학 교육혁신	대학 교육혁신 이행률 -	연평균 20% 증가	대학 교육혁신 이행률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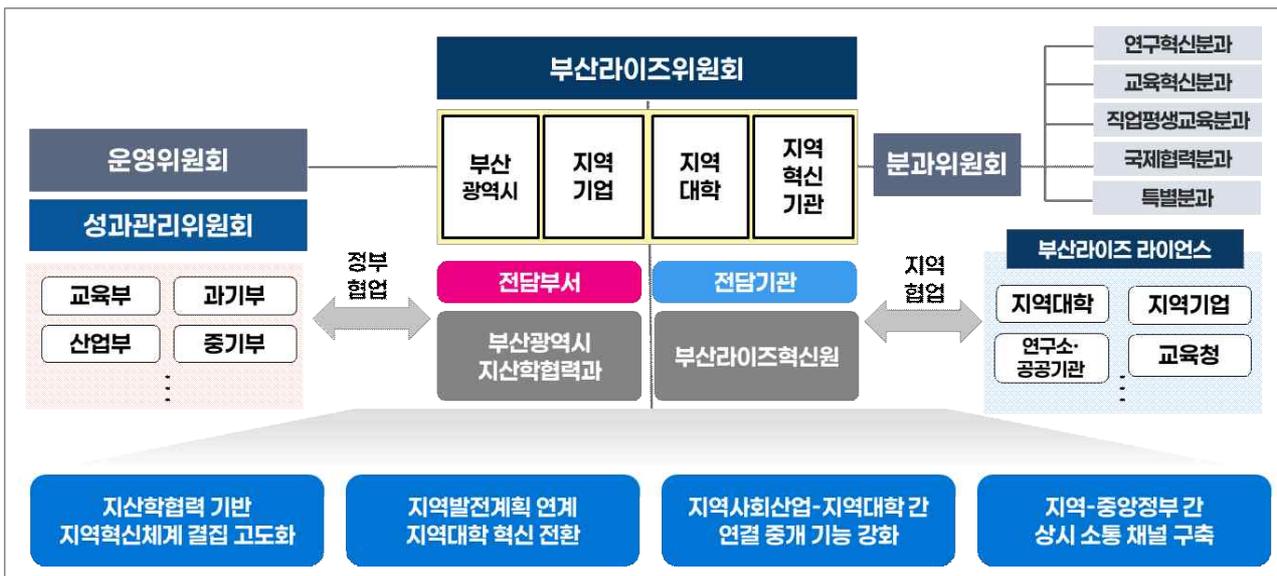
### □ 단위과제별 추진 내용

단위과제	추진 내용	
⑩ 대학 간 공유·협력 기반 공동혁신	가. 부산형 연합대학 생태계 구축 나. 대학 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전체 지역 대학
⑪ 대학 캠퍼스 활용 지역활성화	가. 대학거점 지산학연 협력클러스터 활성화 나. 대학 오픈캠퍼스 활용	
⑫ 대학특화 기반 자율혁신	가. 특화 기반 대학혁신 나. 대학 맞춤형 브랜드 개발	

## VI. 운영체계

### □ 운영체계

- (RISE 거버넌스 체계) 부산라이즈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을 이끄는 다양한 주체들이 얼라이언스로 연결, 지·산·학·연 연계 대학혁신 생태계 구축
  - (부산라이즈위원회) 지역 RISE 추진과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시장(당연직)과 대학총장(호선)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다양한 전문가\* 참여
    - \* 지자체(시, 시의회, 교육청), 22개 지역대학, 산업계(상의, 경총), 혁신기관(라이즈센터, BISTEP, BDI, TP 등)
  - (부산시) 청년, 대학,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청년산학국 산하 RISE 업무 총괄 전담부서(지산학협력과)를 두고 RISE 대응 전담팀 신설('23.7월~)
  - (부산라이즈혁신원\*) 지역라이즈센터로서 (재)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내 독립 부설기관으로 출범('24.7월~), 부산시 지역대학혁신정책 지원, 대학재정 지원사업 관리 및 성과평가 및 환류 등 수행
    - \* 인사·재정의 독립성 및 전문성·대외적 위상 강화를 위해 내부 위임규정 개정 및 부설 기관명 변경('24.12.26.)



- (지역대학) 총장의 리더십 하에 비전과 발전전략 등 고려한 RISE 추진
  - (조직구성) 대학 내 분절적 사업 운영 방지를 위해 RISE를 통해 수행하는 단위 과제 수와 무관하게 1교당 1개의 라이즈사업단 구성

## Ⅶ. 성과관리 계획

### □ 성과관리 기본방향

#### 세밀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한 대학 현장의 성과창출 제고

- (성과관리체계) 부산시·라이즈센터·대학이 연계된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선순환 관리체계 구축
- (자율성) 대학의 세부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성과 결과에 대해 책임성 강화
- (모니터링 및 컨설팅)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모니터링컨설팅 기능 강화
- (성과환류) 성과 평가결과를 차년도 추진방향에 반영 및 조정(인센티브 부여 기준 등)하기 위한 성과환류 기능 강화

### □ 성과분석 및 평가

- (성과평가) 부산시와 대학의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사업수행 단계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대학 및 부산시의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결과를 환류
- (성과분석) 부산형 RISE사업 성과 목표·지표를 기준으로 해당기간 내 창출된 실적, 양적 성과를 정량·정성적 분석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차등지원(1차년도 이후)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개선 또는 예산 및 인센티브 차등 반영

구분	평가결과				
	S (90점 이상)	A (80점~89점)	B (70점~79점)	C (60점~69점)	D (60점 미만)
인센티브/패널티	20% 이내	10% 이내	0%	-20% 이내	중단

- (성과창출 모니터링) 부산시 중심의 프로젝트 운영 및 체감형 성과 창출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
- (현장중심 컨설팅) 부산라이즈센터가 전문위원회 구성하여 사업성과 유도를 위한 프로젝트 자문 및 현장방문 중심의 컨설팅 추진
- (데이터 기반 관리) 프로젝트별 운영관리 및 성과분석 효율화를 위해 데이터 기반 관리 시스템 구축

### □ 성과확산

- (성과 공유 플랫폼 구축) 부산시와 대학 간 성과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대학 RISE 사업 성공모델 확산
- (성과 기반 협력 강화)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 내 연계산업과 협업 촉진

- (성과 환류 체계 구축) 성과평가를 통해 도출된 강점과 개선점을 대학과 공유, 다음 사업 연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피드백 체계 구축
- (성과 공유 및 홍보방안) 성과 보고회, 성과 교류 워크숍, 성공 사례집 등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 □ 프로젝트 및 단위과제별 성과지표 구성



## Ⅷ. 재정투자 계획

### □ 재정투자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

- 대학의 역량과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중심으로 사업유형 설정
  - 대학 자율적 지역혁신과제 기획 유도를 위한 선택과 집중 방식
- 사업유형에 따른 대학의 필수과제 지정과 자율과제 선택 가능
  - 대학 유형별로 인재·산업혁신 단위과제 필수, 사회·대학혁신 단위과제 자율 선택
- 교육부 RISE 4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부산형RISE 프로젝트별 비율 조정
  - \*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지산학연 협력생태계 구축, 직업·평생교육 혁신, 지역현안해결
- Bottom-Up 방식 단위과제 예산 편성
  - 대학별 특성화, 기존 우수사업 연계, 대학-지자체 협력 사업 등의 수요 반영
- 대학의 예산편성 자율성 보장, 예산 관리 체계 강화
  - 대학의 특성화 및 과제 내용에 따른 예산편성의 자율성 보장
  - 사업성과 연계, 예산집행 현황의 수시 모니터링으로 예산 관리 체계 강화

### □ 프로젝트별 예산편성 기준

- RISE 4대 성과목표 달성 및 대학이 지역산업과 사회에 미치는 기여도를 증대시키고 지속 가능한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목적
- 미래인재 확보와 산업고도화(프로젝트 ①과 ②)에 전체 예산의 60% 집중 투자, 사회혁신과 대학혁신(프로젝트 ③과 ④)에 각각 25%, 15% 편성

구 분	① 인재혁신 (Human-Wave)	② 산업혁신 (Industrial-Wave)	③ 사회혁신 (Social-Wave)	④ 대학혁신 (University-Wave)
예산편성	30%	30%	25%	15%

※ RISE 선정평가를 통해 프로젝트 간 예산비율 변경 가능

### 참고자료 3

## 부산형 RISE 기본계획 단위과제별 개요

### □ [단위과제①] 사업개요 요약

프로젝트	<input type="checkbox"/> 미래인재 확보를 위한 Human-Wave	단위과제	① 미래산업 선도 연구인재 양성
		과제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정형(연구중심형) <input type="checkbox"/> 선택형
<b>1. 기본 방향</b>			
□ 부산시 5대 신산업 및 유망 신기술 수요 기반 특화·공동R&D를 통한 효과적인 연구인재 양성 체계 구축			
<b>2. 추진 내용</b>			
※ 아래의 내용은 예시이며 단위과제 추진 내용은 단위과제별 자율성과지표를 달성가능한 범위에서 대학이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개발하여 공모			
<b>가. 수요기반 공동R&amp;D를 통한 연구인재 육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현장기반 연구인력) 중소·중견기업 수요에 기반한 R&amp;D프로젝트 수행으로 산업현장에서 직접 필요로 하는 연구인재 양성 및 채용연계 지원</li> <li>- (기업현장 오픈캠퍼스 운영) 지역 중견기업과 대학들이 연계하여 기업 현장 오픈캠퍼스 운영 ※ 「첨단산업인재혁신 특별법」 참조</li> <li>- (산학연 공동R&amp;D 교육과정) 부산의 미래 먹거리인 신기술 분야 대학-기업-출연(연) 공동 R&amp;D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 운영 ※ 학연협력플랫폼 구축 시범사업(Uni-Core) 연계 <b>(과기부)</b></li> <li>- (예비연구인재 육성) 부산 미래신기술 우수 연구인재 Pool 유입 확대를 위한 학부생 연구 프로젝트 및 학·석사 연계 교육·연구 모델 등 추진</li> <li>- (대학원 특성화) 부산 미래산업 분야 혁신을 선도할 연구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지역 대학 대학원 특성화 설립 등 지원</li> </ul>			
<b>나. 산·학·연 협력생태계 구축을 통한 고급인재 정착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형 산·학·연 협력생태계) 초기 기술단계인 미래 신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중심형대학 간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대학-연구소-기업 협력 총괄계획을 수립, 이를 통합 프로그램으로 체계화</li> <li>- (기업공동연구소 유치) 미래 신기술별로 대학에 특화R&amp;D 인재양성의 거점 기관인 기업공동 연구소 유치·설립·운영 지원</li> <li>- (우수 석·박사 정착) 국내외 및 지역 우수 석·박사 고급인재를 정착시키기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li> </ul>			
<b>다. 대학 기술기반 창업생태계 조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창업 특화교육 강화) 연구자 창업교육대상 확대 및 딥사이언스·딥테크 분야 기술창업 교육·보육부터 후속 R&amp;BD까지 연계 지원 ※ 부산시 창업지원 전담기관(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전국 최초)과 연계 운영 <b>(부산시)</b></li> <li>- (스핀오프 창업지원) 출연(연), 기업연구소 등 고경력 재직자의 스핀오프를 지원하여 대학 내 창업기업을 입주시켜 대학 연구자 취업을 연계</li> </ul>			
<b>3. 부산시 자율성과지표</b>			
□ 산학연협력기반 연구인재 양성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연 공동연구개발과제 참여 교원 및 학생 수</li> <li>- 부산형 RISE를 통한 대학 기술기반 창업자 수</li> </ul>			

## □ [단위과제② 사업개요 요약]

프로젝트	① 미래인재 확보를 위한 Human-Wave	단위과제	② 지역산업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
		과제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정형(교육중심형) <input type="checkbox"/> 선택형
<b>1. 기본 방향</b>			
□ 부산시 9대 전략산업 기반 현장실습 교육 강화 등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혁신생태계 구축			
<b>2. 추진 내용</b>			
※ 아래의 내용은 예시이며 단위과제 추진 내용은 단위과제별 자율성과지표를 달성가능한 범위에서 대학이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개발하여 공모			
<b>가. 산업계 연계 교육과정 혁신기반 역량 강화</b>			
-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부산의 전략·뿌리산업 등 특화분야 대학-기업 공동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 마련			
- (부산 레전드 50+ 프로젝트) 부산 주력산업 분야 인재양성과 기업지원을 연계한 '부산 레전드 50+ 프로젝트' 운영 ※ 레전드 50+ 2.0 사업 연계 <b>[중기부]</b>			
- (부산전략산업 맞춤형 계약학과 운영) 부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 등 부산지역 신성장 산업 분야 산업체 계약학과 운영을 통해 디지털금융, 전력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기술 분야 맞춤형 인재양성			
<b>나. 지역 주력산업 실무인재 취업·정주 지원</b>			
- (대학 학점 연계형 인턴십 확대) 기업 임무형 프로젝트 수행(직무역량 제고 등) 기반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 연계 강화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연계 <b>[고용부]</b>			
- (교육·취업 강화) 청년친화적 우수 지역기업을 연계한 대학생(졸업예정자) 양질의 일자리 발굴 확대와 취업지원 연계 고도화 ※ 청끌 <sup>청년이 끌리는</sup> 기업이 끌리는 기업 사업 연계 <b>[부산시]</b>			
- (취업역량 강화 교육) 학과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패키지(단계별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기업 요구 직무역량 함양			
<b>다. 대학 창업교육 고도화로 지역 창업인재 육성</b>			
- (창업 교육 내실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초교육, 창업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후속 지원의 패키지 형태의 교육 제공 ※ 창업중심대학 사업 연계 <b>[중기부]</b>			
- (부산형 창업패키지 사업) 부산대학창업협의체(부산시, 대학, 창업지원기관 등)를 구성하여 부산형 창업패키지 고도화 추진 ※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 연계 <b>[부산시]</b>			
- (창업친화 학사제도 활성화) 창업학기제 등 창업친화 학사제도를 확산하여 다양한 창업교육 및 실전창업을 통한 학생 창업역량 향상			
- (투자지원 전문가 양성) 부산시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24년)과 연계 기술창업 활성화에 필요한 예비 AC·VC 등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b>3. 부산시 자율성과지표</b>			
□ 산업연계 핵심 실무인재 양성 실적			
- 표준현장실습/계약학과/ 주문식 교육 과정 참여학생 수			
- 지역 내 학생·교원창업 창업자 수			

## □ [단위과제③] 사업개요 요약

프로젝트	① 미래인재 확보를 위한 Human-Wave	단위과제	③ 기업수요 기반 전문기술인재 양성
		과제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정형(직업 평생교육중심형) <input type="checkbox"/> 선택형
<b>1. 기본 방향</b>			
□ 지역기업 수요에 기반한 특화된 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가능한 전문 기술인재 양성			
<b>2. 추진 내용</b>			
※ 아래의 내용은 예시이며 단위과제 추진 내용은 단위과제별 자율성과지표를 달성가능한 범위에서 대학이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개발하여 공모			
<b>가. 지역 특화산업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지역기업 인력난 및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대학-기업 연계 직무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운영</li> <li>- (채용연계형 주문식 교육과정) 부산 지역기업의 주문이나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직무영역 교육과정 운영</li> <li>- (특성화고 연계 인재양성) 중소기업 전문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를 연계한 우수한 전문기술인력 양성</li> </ul>			
<b>나. 지역 특화산업 직업교육 고도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지역기업 인력난 및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대학-기업 연계 직무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운영</li> <li>- (지역산업체 맞춤형 디지털 전환 교육) 지역기업 재직자의 부족한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여 지역기업의 DX 전환 유도</li> <li>- (직업(재)교육 체계 고도화) 대학의 핵심역량 체제를 수요자 중심 직무역량·기술(NCS) 체계로 개편 지원</li> </ul>			
<b>다. 지역가치 기반 창업인재 육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전창업 패키징 제공) 창업 종류, 법인·개인사업자, 회계, 세무 등 창업의 전과정에 대한 교육 과정 개발 운영</li> <li>-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소상공인 혁신성장거점을 기반으로 대학 보유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청년이 함께 만나는 창업생태계 조성</li> </ul> <p style="margin-left: 20px;">※ 부산시 B-라이콘 사업 연계 <b>(부산시)</b></p>			
<b>3. 부산시 자율성과지표</b>			
<b>□ 수요맞춤형 기술인재 양성 실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현장실습/계약학과/주문식교육 과정 참여학생 수</li> <li>- 창업교육현황(교과/비교과) 참여학생 수</li> </ul>			

## □ [단위과제④] 사업개요 요약

프로젝트	② 산업고도화를 위한 Industrial-Wave	단위과제	④ 미래산업 기반 연구개발 강화
		과제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정형(연구중심형) <input type="checkbox"/> 선택형
<b>1. 기본 방향</b>			
□ 부산 5대 신산업 미래 기술 분야 대응을 위하여 부산의 차세대 주력산업 육성 체계 기틀 마련			
<b>2. 추진 내용</b>			
※ 아래의 내용은 예시이며 단위과제 추진 내용은 단위과제별 자율성과지표를 달성가능한 범위에서 대학이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개발하여 공모			
<b>가.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학·연 R&amp;D 활성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수요 기반 R&amp;D 활성화) 부산의 미래 먹거리인 신기술 분야 요구 기반 대학 특화 R&amp;D 수행            ※ 지역 앵커기업-지역대학 전략기술공동개발(RAPID) 사업 연계 <b>[산업부]</b></li> <li>- (부산연합기술지주 활성화) 16개 지역대학연합을 통한 기술이전 및 창업지원 플랫폼인 연합 기술지주와 연계 협력하여 대학 내 우수 기술이전 및 초기 창업지원사업 강화를 위한 모델 개발</li> <li>- (R&amp;D인프라 공동 활용) 대학 보유 연구장비를 지역기업이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실증·생산 지원체계 마련</li> </ul>			
<b>나. 대학 R&amp;D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 주도 기술사업화) 연구자 주도로 민간 TLO, 기술지주회사 등 기술사업화 주체와의 협력 확대 및 사업화 전주기 지원</li> <li>- (기술이전 강화)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등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사업화 수요발굴지원단 운영 및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3.0) 사업 연계 확대</li> <li>- (기술 Scale-up) Lab to Market 지원을 위해 기초·원천 연구성과와 시장의 간극(gap)을 줄이는 연구지원 확대            ※ 기초원천 연구성과 활용·촉진 기술키움 사업('25.~) 및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 연계 <b>[과기부]</b></li> <li>- (기술 패키징)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 대학 R&amp;D 성과 기술 패키징을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 컨설팅 지원</li> </ul>			
<b>다. 대학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경영자 협력형 창업 R&amp;D 지원) 연구자, 기업 및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의 협업을 통해 최종 수요제품·서비스 설정, 경영자 발굴 및 예비창업팀 구축, 목표시장 발굴·분석, BM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등 기술창업을 위한 R&amp;D 지원</li> <li>- (가칭)딥사이언스 마중물 펀드 조성) 창업형 R&amp;D 및 초기 기술창업 지원하는 소규모 특화 펀드* 조성 추진, 향후 대형 투자(VC)의 마중물 역할 수행            * (부산시 활용 가능 펀드) 부산 모태펀드(B.STAR, '28년까지 21조원 조성 예정),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글로벌 디지털·소부장 창업펀드 등 <b>[부산시]</b>            (정부 활용 가능 펀드) 연구개발특구펀드(약 4,500억원), 공공기술사업화펀드(2,500억원), 우주분야 모태펀드('24년까지 960억원) 등</li> </ul>			
<b>3. 부산시 자율성과지표</b>			
<b>□ 산학연 공동연구개발과제 실적 증가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재산권(특허, 논문, 기타) 창출 실적 증가율</li> <li>- 건당 기술이전 수익 실적 증가율</li> </ul>			

## □ [단위과제⑤ 사업개요 요약]

프로젝트	② 산업고도화를 위한 Industrial-Wave	단위과제	⑤ 지역기업 혁신성장 촉진
		과제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정형(교육중심형) <input type="checkbox"/> 선택형
<b>1. 기본 방향</b>			
□ 부산 9대 전략산업 중심 산학협력 혁신모델 구축을 통하여 기술 성과의 산업적 가치 창출			
<b>2. 추진 내용</b>			
<p>※ 아래의 내용은 예시이며 단위과제 추진 내용은 단위과제별 자율성과지표를 달성가능한 범위에서 대학이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개발하여 공모</p>			
<p><b>가. 산업수요 기반 공동R&amp;D 고도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망 중소기업 R&amp;D 활성화) 지역 유망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수요 맞춤형 R&amp;D를 추진하고, 양적 R&amp;D 중심에서 기술사업화 성과 중심의 연구비 지원체계 강화</li> <li>- (대학-기업 공동 실증 프로젝트) 지역기업과 대학의 협력을 통한 기업수요 맞춤형 실증 지원 제공</li> <li>- (기업제품 고도화 지원) 지역기업 개발 제품의 성능, 실증 평가, 제품화 평가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가치 향상</li> <li>- (대학-지자체 연계 기업 R&amp;D 지원) 대학-지자체 중심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기업과 단계적인 R&amp;D 진행            ※ 지역혁신선도기업 R&amp;D 협업사업 연계 <b>[중기부]</b></li> </ul>			
<p><b>나. 지역기업(수요)-대학(공급) 간 기술협력 확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수요 매칭 강화)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등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사업화 수요발굴 및 매칭 강화</li> <li>- (기술이전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대학 기술이전 후, 해당 기업의 매출액 증대 등 견고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지원 및 활성화</li> <li>- (기업 시장경쟁력 강화 지원) 인공지능, ESG 분야 등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지역기업에 패키지 형태의 기술지원을 추진</li> </ul>			
<p><b>다. 대학발 혁신창업 저변 확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발 창업 활성화) 대학 보유 우수 창업교육·보육 인프라 및 지원 프로그램의 지역 공유·확산으로 대학발 창업 활성화 도모            ※ 창업중심대학 사업 연계 <b>[중기부]</b></li> <li>- (실험실 중심 창업기업 육성)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활용해 대학 실험실 창업 전주기(인프라, 창업준비, 기업성장) 지속 지원</li> </ul>			
<b>3. 부산시 자율성과지표</b>			
□ 산업체수요기반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성과 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당 기술이전 수익 실적 증가율</li> <li>- 프로그램 참여기업 매출액 증가율</li> </ul>			

## □ [단위과제⑥] 사업개요 요약

프로젝트	② 산업고도화를 위한 Industrial-Wave	단위과제	⑥ 현장밀착형 지역기업 문제해결
		과제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정형(직업·평생교육중심형) <input type="checkbox"/> 선택형
<b>1. 기본 방향</b>			
□ 지역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현장기술 문제해결로 기업 경쟁력 제고와 산학협력 비즈니스 모델 창출			
<b>2. 추진 내용</b>			
※ 아래의 내용은 예시이며 단위과제 추진 내용은 단위과제별 자율성과지표를 달성가능한 범위에서 대학이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개발하여 공모			
<b>가. 지역기업연계 산학공동기술개발 촉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별 특화 R&amp;BD 강화) 대학별 강점 분야와 지역기업을 연계하여 집중 R&amp;BD 특화분야 구축·운영</li> <li>- (기술교류 네트워크 강화) 지역기업 기술수요-대학공급 간 연계 강화를 위한 기술설명회 등 기술매칭, 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지원</li> <li>-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대학 내 지역기업연계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해 교원업적 평가 시 산학협력 실질 반영 비율 향상</li> </ul>			
<b>나. 중소기업현장 맞춤형 문제해결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전환 애로기술 지원) AI·DX 애로기술 비즈니스 지원과 개방형 AI·DX 재직자 대상 전문교육 실시</li> <li>- (권역별 현장기술 지원센터 운영) 특정 산업군이 밀집한 기업현장에 밀착하여 현장 애로기술을 상시적·즉각적·전문적으로 해결·자문·컨설팅 등 운영</li> <li>- (지역기업 문제해결 프로젝트 운영) 지식·협력형 PBL, 리빙랩 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지역기업의 최우선 과제 해결 지원</li> </ul>			
<b>다. 지역정주 실천창업 지원체계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 강점분야 창업 활성화) 부산지역의 자원 혹은 공간을 활용한 지역특화 기반 기업가형 소상공인(B-라이콘) 사업화 지원</li> <li>- (골목상권·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혁신성장거점(부산시 B-라이콘타운)을 중심으로 지역대학과 연계한 골목상권·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li> </ul>			
<b>3. 부산시 자율성과지표</b>			
□ 기업현장 문제해결 지원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자교육 참여기업 수</li> <li>- 산업자문활동 수혜기업 수</li> </ul>			

## □ [단위과제⑦] 사업개요 요약

프로젝트	③ 지역가치 확산을 위한 Social-Wave	단위과제	⑦ 지역 및 대학 글로벌 경쟁력 제고	
		과제유형	<input type="checkbox"/> 지정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형
<b>1. 기본 방향</b>				
□ 대학 보유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글로벌 인재 확보 및 해외 파트너십 구축				
<b>2. 추진 내용</b>				
※ 아래의 내용은 예시이며 단위과제 추진 내용은 단위과제별 자율성과지표를 달성가능한 범위에서 대학이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개발하여 공모				
<b>가.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육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거점형 유학 네트워크) 해외 현지 거점 기관을 중심으로 우수 유학생을 선발하여 해외 우수 인재를 부산으로 유입</li> <li>- (유학생 특화 교육모델 운영)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한 전공 탐색 기회 보장 및 교육 강화를 위한 유학생 특화 교육과정 운영</li> <li>- (글로벌인재 취업·정주지원 통합플랫폼 구축) 우수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으로 지역 취업 및 정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유학생 지역기업 채용 활성화 사업 연계 (중기부)</li> </ul> </li> </ul>				
<b>나. 외국인 주민 맞춤형 지원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학생 Career 로드맵) 유학생 정주단계(전문학사-학·석·박사-취업-지역정주)에 따라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유학생 경력개발 로드맵 운영</li> <li>- (유학생 맞춤형 지원역량 강화) 대학 내 전담인력 지정 등 행정력 강화 및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획득 등 유학생 교육 질 관리 강화</li> <li>- (외국인 커리어브릿지 교육) 결혼이주여성(F-6) 및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E-9, E-10) 대상 지역정주 지원 프로그램 운영</li> </ul>				
<b>다. 대학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브랜드 강화) 해외 우수 대학, 연구기관, 기업과 연계한 글로벌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li> <li>-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대학 및 부산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지·산·학·연 연계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 운영</li> <li>- (글로벌 공동연구허브 조성) 해외 주요 대학, 글로벌기업과 국제 공동연구 기반 마련 등 지역대학 중심의 글로벌 혁신생태계 선도</li> </ul>				
<b>3. 부산시 자율성과지표</b>				
□ 국제협력 및 우수 외국인재 유치 실적 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주관 국제행사 개최 실적 증가율</li> <li>- 외국인 유학생 수 증가율</li> </ul>				

## □ [단위과제⑧] 사업개요 요약

<b>프로젝트</b>	③ 지역가치 확산을 위한 Social-Wave	<b>단위과제</b> <b>과제유형</b>	⑧ <b>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b> <input type="checkbox"/> 지정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형
<b>1. 기본 방향</b>			
□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육체계 개발 및 학위·비학위과정 운영을 통해 평생교육 인식 제고 및 참여 유도			
<b>2. 추진 내용</b>			
※ 아래의 내용은 예시이며 단위과제 추진 내용은 단위과제별 자율성과지표를 달성가능한 범위에서 대학이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개발하여 공모			
<p><b>가. 성인학습자 수요 기반 평생교육 체제 고도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학습자 전용 단과대학) 대학의 특화 분야와 연계한 성인학습자의 재교육을 유도하는 학과 및 단과대학 개발 및 운영</li> <li>- (대학 중심 시민인재 양성) 대학 평생교육 역량을 활용하여 구직자, 직업 전환 희망자, 재직자 등 대상자별 특화 심화 직업교육 과정 등 개발·운영</li> <li>- (부산시민대학 학과제 운영)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대학, 전문기관이 연계하여 시민의 생애 역량 향상을 위한 학과제 운영</li> </ul> <p>※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온-시민 학습이력관리) 연계 <b>(부산시)</b></p>			
<p><b>나. 소외계층 대상 평생학습 및 적정기술 개발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해학습 교육 운영) 생활·디지털·금융 등 문해학습자 맞춤형 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제공</li> <li>-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평생교육으로 사회 대처 능력향상을 위한 자립·사회적응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li> <li>- (적정기술개발 및 운영지원)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적정기술 개발 지원 확대</li> <li>- (자립청년지원 프로그램)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홀로서기를 위한 학업지원, 직업훈련 등 대학 연계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li> <li>- (초·중등 교육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저소득·다문화 가정 등 교육취약계층 대상 대학-지자체-교육청 협력 학생 성장 발달 프로그램 운영</li> <li>-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학-지자체 협력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특화 프로그램 운영 (학업, 상담, 진로체험 등)</li> </ul>			
<b>3. 부산시 자율성과지표</b>			
□ 성인학습자 참여 및 성과 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학습자 참여자 수 증가율</li> <li>- 참여 성인학습자 취·창업 증가율</li> </ul>			

## □ [단위과제⑨] 사업개요 요약

프로젝트	③ 지역가치 확산을 위한 Social-Wave	단위과제	⑨ 대학과 지역사회 상생협력 강화	
		과제유형	<input type="checkbox"/> 지정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형
<b>1. 기본 방향</b>				
□ 인구감소, 지역소멸 문제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대학-지자체-기업 연계 지역 활력 프로그램 운영				
<b>2. 추진 내용</b>				
※ 아래의 내용은 예시이며 단위과제 추진 내용은 단위과제별 자율성과지표를 달성가능한 범위에서 대학이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개발하여 공모				
<b>가. 사회문제 해결형 리빙랩 프로젝트 운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문사회예술 리빙랩 프로젝트)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해 대학의 인적·물적·지적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상생·협력 프로젝트 운영</li> <li>- (기술기반 리빙랩 프로젝트) 지자체의 현안·문제해결을 위해 대학 보유 기술 및 연구성과, 적정기술을 접목한 연구형 리빙랩 프로젝트 운영</li> </ul>				
<b>나. 부산 활력-Up 프로그램 운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활력 생태계 구축) 낙후된 공간, 지역 상권 활성화 등 회복과 치유를 통한 도시활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화) 고령화 문제 대응 웰에이징, 시니어케어, 지역사회 봉사 등 운영</li> </ul> </li> <li>- (지역문화 활력 프로그램) 부산지역 가치를 활용한 지역의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li> </ul>				
<b>다. 대학의 사회공헌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연합 지역사회공헌 협의체) 부산시 대학이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 대학의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협의체 구성</li> <li>- (대학 자원의 지역사회 환원) 대학 보유 자원(사회·경제적 가치 창출 제품, 서비스 개발 지원 등)을 지역주민의 삶 개선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공동 연구를 통한 정책 제언, 개선과제 도출</li> <li>·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 정책을 연계해 「부산형 통합 늘봄 허브」 전략 마련</li> </ul> </li> </ul> <p>※ 늘봄학교 사업 연계 (교육부)</p>				
<b>3. 부산시 자율성과지표</b>				
□ 지역사회 현안해결 프로그램 운영성과 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문사회예술기반 지역현안해결 프로그램 운영 실적 증가율</li> <li>- 참여 지역민 만족도 증가율</li> </ul>				

## □ [단위과제⑩] 사업개요 요약

<b>프로젝트</b>	<input checked="" type="checkbox"/> 4 대학 대전환을 위한 University-Wave	<b>단위과제</b> <b>과제유형</b>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⑩ 대학 간 공유·협력기반 공동혁신 <input type="checkbox"/> 지정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형
<b>1. 기본 방향</b>			
<input type="checkbox"/> 지역대학 간 학과, 교육체계 등 장벽 허물기를 통해 대학 간 공유·협력 활성화			
<b>2. 추진 내용</b>			
※ 아래의 내용은 예시이며 단위과제 추진 내용은 단위과제별 자율성과지표를 달성가능한 범위에서 대학이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개발하여 공모			
<b>가. 부산형 연합대학 생태계 구축</b> - (공유·협업 활성화) 산업계 수요와 대학별 특성화 기반의 교육역량 및 연구인프라에 대한 부산형 대학 연합 체계 마련 - (공동교육과정 개발·운영)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 미래산업 기반 대학 간 융합전공 및 모듈형 소단위 학위과정 등 교과·비교과 과정 개발·운영 - (대학 간 협력체계 고도화) 대학 간 공유·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학 간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 및 부·울·경 광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b>나. 대학 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b> - (공동학습지원센터 운영) 대학 간 성인학습자, 해외유학생 대상 공동 교육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공동학습지원센터 운영 - (취약계층 지원 공동개발) 지자체-대학 간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 학습지원을 위한 공동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고등교육기관 간 연계 강화) 부산지역 대학-사이버대학·폴리텍대학 간 공유·협업 활성화			
<b>3. 부산시 자율성과지표</b>			
<input type="checkbox"/> 대학 간 연계·협력 실적 -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건수 - 대학 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 건수			

## □ [단위과제⑪] 사업개요 요약

프로젝트	④ 대학 대전환을 위한 University-Wave	단위과제	⑪ 대학 캠퍼스 활용 지역활성화	
		과제유형	<input type="checkbox"/> 지정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형
<b>1. 기본 방향</b>				
□ 대학의 유휴부지·공간·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산학연협력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등, 대학 캠퍼스를 지역 활성화 공간으로 전환				
<b>2. 추진 내용</b>				
※ 아래의 내용은 예시이며 단위과제 추진 내용은 단위과제별 자율성과지표를 달성가능한 범위에서 대학이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개발하여 공모				
<b>가. 대학거점 지산학연 협력클러스터 활성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입주 촉진) 대학 캠퍼스 내 기업 및 연구소 입주를 촉진하여 공동연구, 현장실습 등 상시적·지속적 산학협력 활동 도모</li> <li>- (기업유치 지원) 부산시 우수 기업 유치 전력과 연계하여 인재 양성 프로그램 및 입주 공간 제공</li> <li>- (지역창업 거점화) 대학 캠퍼스 및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청·장년 창업가 양성 및 대학거점형 지역창업생태계 구축에 기여</li> <li>- (문화·복지·교육 복합공간 활용) 대학 보유자원과 역량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지역청년 문화·복지·교육 복합공간으로서 지역정주여건 개선</li> <li>- (유학생 통합기숙사) 유학생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글로벌 인재 유치에 기여하기 위한 외국인 유학생 통합 기숙사 부지 제공 등 지원</li> </ul>				
<b>나. 대학 오픈캠퍼스 활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시설 활용) 대학 유휴부지·공간·시설을 활용하여 캠퍼스를 지역사회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li> <li>- (대학시설 개방) 대학 캠퍼스 시설을 기업 및 지역민에게 개방하고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li> <li>- 대학 강의실 및 강당, 체육·문화시설, 연구장비 등 개방, 시민참여형 대학 축제 및 주민 참여 워크숍·세미나 개최</li> </ul>				
<b>3. 부산시 자율성과지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캠퍼스 내 지역혁신거점공간 활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캠퍼스 내 입주 기업 수</li> <li>- 캠퍼스 시민개방 활용 건수</li> </ul> </li> </ul>				

## □ [단위과제<sup>⑫</sup>] 사업개요 요약

프로젝트	<input checked="" type="checkbox"/> 4 대학 대전환을 위한 University-Wave	단위과제	⑫ 대학특화기반 자율혁신	
			과제유형	<input type="checkbox"/> 지정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형
<b>1. 기본 방향</b>				
□ 대학의 역량 및 보유자원을 중심으로 대학 운영방법, 재정효율화 등 자율적 체질 개선				
<b>2. 추진 내용</b>				
<div style="border: 1px dashed red;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 아래의 내용은 예시이며 단위과제 추진 내용은 단위과제별 자율성과지표를 달성가능한 범위에서 대학이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개발하여 공모         </div> <p><b>가. 특화 기반 대학혁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지속가능 경영체계) 효과성 및 투명성 중심의 고등교육 사업운영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율적 대학재정 운영과 대학 운영의 공공성 및 재정의 투명성 강화, 지속가능한 (SDGs&amp;ESG) 지표 개발 및 적용 등</li> </ul> </li> <li>- (학생 중심 전공체제 전환) 학생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체계(무전공 등) 개편을 통한 학사 운영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문·학과 간의 벽 허물기로 학생 중심의 전공 체계로 전면 개편</li> </ul> </li> <li>- (해외 혁신사례 적용) 워털루대학, ASU, 노스캐롤라이나 RTP 등 해외대학 벤치마킹 사례를 적용하여 대학의 운영 방안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대학 연계 혁신 교육 프로그램(학위과정, 온라인 과정 개발·운영) 등</li> </ul> </li> <li>- (지역의대 교육혁신) 의과대학이 학교별·지역별 교육여건을 고려한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우수한 지역의료·필수의료 인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의대 교육혁신 지원사업 연계 (교육부)</li> </ul> </li> </ul>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p><b>나. 대학 맞춤형 브랜드 개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특화 학과 개발) 지역 인구구조 변화, 산업생태계 재편에 따른 특화 학과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내 유사 학과 중복 개선, 대학 특성화 방향 설정을 통한 학과 육성 계획 수립 등</li> </ul> </li> </ul>				
<b>3. 부산시 자율성과지표</b>				
□ 대학 교육혁신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대비 대학 교육혁신 목표 달성률</li> </ul>				

## 참고자료 4

## 부산시 자율성과지표 산출식

### ① 산학연협력기반 연구인재 양성 실적

지표명	측정방식		
산출식	산학연협력기반 연구인재 양성 실적 = ㉗×0.6+㉘×0.4		
㉗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과제 참여 교원 및 학생 수	[정의] 부산형 RISE를 통해 산학연 공동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교원 및 학생 수 * 대학-기업, 대학-출연연 등 대학을 중심으로 산(産), 연(研)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 개발과제		
	< 지표 산출식 >		
	지표명	비중	단위
	산학연 공동연구개발과제 참여 교원 및 학생 수 = 0.3×A+0.7×B		
	산학연 공동연구개발과제 참여 교원 수 (A)	0.3	명
산학연 공동연구개발과제 참여 학생 수 (B)	0.7	명	
[통계자료 출처] 대학에서 제출한 자료 활용			
㉘ 대학 기술기반 창업자 수	[정의] 부산형 RISE를 통한 대학 기술기반 창업자* 수 *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권(특허권과 특허권 이외 지식재산권(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에 기반하여 창업한 자		
	< 지표 산출식 >		
	지표명	단위	
	대학 기술기반 창업자 수		명
[통계자료 출처] 대학에서 제출한 자료 활용(※ 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작성 지침 참고)			

### ② 산업연계 핵심 실무인재 양성 실적

지표명	측정방식				
산출식	산업연계 핵심 실무인재 양성 실적 = ㉙×0.5+㉚×0.5				
㉙ 표준현장실습/ 계약학과/ 주문식교육 과정 참여학생 수	[정의] 부산형 RISE를 통해 산업연계 교육과정(표준현장실습, 계약학과, 주문식 교육)에 참여한 학생 수				
	[산출식] 표준현장실습/계약학과/ 주문식 교육 과정 참여학생 수 = D+E+F				
	< 지표 산출식 >				
	실적 구분		가중치	합계	
	참여학생 수	표준현장실습 이수학생 수	A	0.4	D = A × 0.4
		계약학과 재학생 수	B	0.3	E = B × 0.3
주문식교육 참여학생 수		C	0.3	F = C × 0.3	
표준현장실습/계약학과/ 주문식 교육 과정 참여학생 수 = D+E+F					
[통계자료 출처] 대학에서 제출한 자료 활용(※ 대학정보공시 작성 지침 참고)					
㉚ 지역 내 학생·교원 창업 창업자 수	[정의] 부산형 RISE를 통해 학생 및 교원이 지역 내 창업한(창업자) 수				
	< 지표 산출식 >				
	지표명	단위			
지역 내 학생·교원 창업자 수				명	
[통계자료 출처] 대학에서 제출한 자료 활용(※ 대학정보공시 작성 지침 참고)					

### ③ 수요맞춤형 기술인재 양성 실적

지표명	측정방식																					
산출식	수요맞춤형 기술인재 양성 실적 = ㉓×0.5+㉔×0.5																					
㉓ 표준현장실습/ 계약학과/ 주문식교육과정 참여학생 수	[정의] 부산형 RISE를 통해 산업연계 교육과정(표준현장실습, 계약학과, 주문식 교육)에 참여한 학생 수 [산출식] 표준현장실습/계약학과/ 주문식 교육 과정 참여학생 수 = D+E+F < 지표 산출식 >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실적 구분</th> <th>가중치</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참여학생 수</td> <td>표준현장실습 이수학생 수</td> <td>A</td> <td>0.4</td> <td>D = A × 0.4</td> </tr> <tr> <td>계약학과 재학생 수</td> <td>B</td> <td>0.3</td> <td>E = B × 0.3</td> </tr> <tr> <td>주문식교육 참여학생 수</td> <td>C</td> <td>0.3</td> <td>F = C × 0.3</td> </tr> <tr> <td colspan="4">표준현장실습/계약학과/ 주문식 교육 과정 참여학생 수 = D+E+F</td> </tr> </tbody> </table>	실적 구분		가중치	합계	참여학생 수	표준현장실습 이수학생 수	A	0.4	D = A × 0.4	계약학과 재학생 수	B	0.3	E = B × 0.3	주문식교육 참여학생 수	C	0.3	F = C × 0.3	표준현장실습/계약학과/ 주문식 교육 과정 참여학생 수 = D+E+F			
	실적 구분		가중치	합계																		
	참여학생 수	표준현장실습 이수학생 수	A	0.4	D = A × 0.4																	
계약학과 재학생 수		B	0.3	E = B × 0.3																		
주문식교육 참여학생 수		C	0.3	F = C × 0.3																		
표준현장실습/계약학과/ 주문식 교육 과정 참여학생 수 = D+E+F																						
[통계자료 출처] 대학에서 제출한 자료 활용(※ 대학정보공시 작성 지침 참고)																						
㉔ 창업교육 (교과/비교과) 참여학생 수	[정의] 부산형 RISE를 통해 창업교육(창업강좌, 비정규교과(창업활동))에 참여한 학생 수 < 지표 산출식 >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실적구분</th> <th>단위</th> <th>가중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참여학생 수</td> <td>창업교육(창업강좌) 이수자 수 (A)</td> <td>명</td> <td>0.7</td> </tr> <tr> <td>창업교육(비정규교과(창업활동)) 참여인원 수 (B)</td> <td>명</td> <td>0.3</td> </tr> <tr> <td colspan="4">창업교육현황(교과/비교과) 참여학생수 = A×0.7+B×0.3</td> </tr> </tbody> </table>	실적구분		단위	가중치	참여학생 수	창업교육(창업강좌) 이수자 수 (A)	명	0.7	창업교육(비정규교과(창업활동)) 참여인원 수 (B)	명	0.3	창업교육현황(교과/비교과) 참여학생수 = A×0.7+B×0.3									
	실적구분		단위	가중치																		
	참여학생 수	창업교육(창업강좌) 이수자 수 (A)	명	0.7																		
창업교육(비정규교과(창업활동)) 참여인원 수 (B)		명	0.3																			
창업교육현황(교과/비교과) 참여학생수 = A×0.7+B×0.3																						
[통계자료 출처] 대학에서 제출한 자료 활용(※ 대학정보공시 작성 지침 참고)																						

### ④ 산학연 공동연구개발과제 실적 증가율

지표명	측정방식																																																			
산출식	산학연 공동연구개발과제 실적 증가율 = ㉕×0.4+㉖×0.6																																																			
㉕ 지식재산권 창출 실적 증가율	[정의] 부산형 RISE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창출한 지식재산권(특허, 논문, 기타) 창출 실적 증가율 * (실적평가) 2차년도부터 전년대비 증가율로 평가																																																			
	< 지표 산출식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지식 재산권 실적</th> <th colspan="2">실적 구분 (공동연구개발로 창출된 실적에 한함)</th> <th>지식재산권 창출 실적</th> <th>가중치</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특허</td> <td colspan="2">특허 출원 건수</td> <td>A1</td> <td>0.1</td> <td>B1 = A1 × 0.1</td> </tr> <tr> <td colspan="2">국내 특허 등록 건수</td> <td>A2</td> <td>0.2</td> <td>B2 = A2 × 0.2</td> </tr> <tr> <td colspan="2">해외 특허 등록 건수</td> <td>A3</td> <td>0.3</td> <td>B3 = A3 × 0.3</td> </tr> <tr> <td rowspan="2">논문</td> <td colspan="2">(SCI(E)급) 논문 게재 건수</td> <td>C1</td> <td>0.25</td> <td>D1 = C1 × 0.25</td> </tr> <tr> <td colspan="2">(KCI급) 논문 게재 건수</td> <td>C2</td> <td>0.1</td> <td>D2 = C2 × 0.1</td> </tr> <tr> <td>기타</td> <td colspan="2">기타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 (디자인권·상표권·실용신안 등)</td> <td>E1</td> <td>0.05</td> <td>F1 = E1 × 0.05</td> </tr> <tr> <td colspan="6">지식재산권 창출 실적(G) = B1+B2+B3+D1+D2+F1</td> </tr> <tr> <td colspan="6">지식재산권 창출 실적 증가율(%) = <math>\frac{\text{비교연도 실적}(G_{\text{비교}}) - \text{기준연도 실적}(G_{\text{기준}})}{\text{기준연도 실적}(G_{\text{기준}})} \times 100</math></td> </tr> </tbody> </table>	지식 재산권 실적	실적 구분 (공동연구개발로 창출된 실적에 한함)		지식재산권 창출 실적	가중치	합계	특허	특허 출원 건수		A1	0.1	B1 = A1 × 0.1	국내 특허 등록 건수		A2	0.2	B2 = A2 × 0.2	해외 특허 등록 건수		A3	0.3	B3 = A3 × 0.3	논문	(SCI(E)급) 논문 게재 건수		C1	0.25	D1 = C1 × 0.25	(KCI급) 논문 게재 건수		C2	0.1	D2 = C2 × 0.1	기타	기타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 (디자인권·상표권·실용신안 등)		E1	0.05	F1 = E1 × 0.05	지식재산권 창출 실적(G) = B1+B2+B3+D1+D2+F1						지식재산권 창출 실적 증가율(%) = $\frac{\text{비교연도 실적}(G_{\text{비교}}) - \text{기준연도 실적}(G_{\text{기준}})}{\text{기준연도 실적}(G_{\text{기준}})} \times 100$					
	지식 재산권 실적		실적 구분 (공동연구개발로 창출된 실적에 한함)		지식재산권 창출 실적	가중치	합계																																													
		특허	특허 출원 건수		A1	0.1	B1 = A1 × 0.1																																													
	국내 특허 등록 건수		A2	0.2	B2 = A2 × 0.2																																															
해외 특허 등록 건수			A3	0.3	B3 = A3 × 0.3																																															
논문	(SCI(E)급) 논문 게재 건수		C1	0.25	D1 = C1 × 0.25																																															
	(KCI급) 논문 게재 건수		C2	0.1	D2 = C2 × 0.1																																															
기타	기타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 (디자인권·상표권·실용신안 등)		E1	0.05	F1 = E1 × 0.05																																															
지식재산권 창출 실적(G) = B1+B2+B3+D1+D2+F1																																																				
지식재산권 창출 실적 증가율(%) = $\frac{\text{비교연도 실적}(G_{\text{비교}}) - \text{기준연도 실적}(G_{\text{기준}})}{\text{기준연도 실적}(G_{\text{기준}})} \times 100$																																																				
[통계자료 출처] 대학에서 제출한 자료 활용(※ 대학정보공시 작성 지침 참고)																																																				

<b>㉔</b> <b>건당 기술이전 수익 실적 증가율</b>	<b>[정의]</b> 부산형 RISE를 통해 창출한 기술이전 건당 수익의 증가율 * (실적평가) 2차년도부터 전년대비 증가율로 평가	
	< 지표 산출식 >	
	<b>지표명</b>	<b>단위</b>
	<b>건당 기술이전 수익 실적 증가율 = (A/B-C/D)/(C/D)×100</b>	
	기술이전 실적 비교연도 기술이전 수익 (A)	백만원
	비교연도 기술이전 건수 (B)	건
기준연도 기술이전 수익 (C)	백만원	
기준연도 기술이전 건수 (D)	건	
<b>[통계자료 출처]</b> 대학에서 제출한 자료 활용(※ 대학정보공시 작성 지침 참고)		

### ⑤ 산업체 수요기반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실적 증가율

<b>지표명</b>	<b>측정방식</b>	
<b>산출식</b>	<b>산업체 수요기반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실적 증가율 = ㉗×0.4+㉔×0.6</b>	
<b>㉗</b> <b>건당 기술이전 수익 실적 증가율</b>	<b>[정의]</b> 부산형 RISE를 통해 창출한 기술이전 건당 수익의 증가율 * (실적평가) 2차년도부터 전년대비 증가율로 평가	
	< 지표 산출식 >	
	<b>지표명</b>	<b>단위</b>
	기술이전 실적 비교연도 기술이전 수익 (A)	백만원
	비교연도 기술이전 건수 (B)	건
	기준연도 기술이전 수익 (C)	백만원
기준연도 기술이전 건수 (D)	건	
<b>기술이전 건당 수익 증가율 = (A/B-C/D)/(C/D)×100</b>		
<b>[통계자료 출처]</b> 대학에서 제출한 자료 활용(※ 대학정보공시 작성 지침 참고)		
<b>㉔</b> <b>프로그램 참여기업 매출액 증가율</b>	<b>[정의]</b> 부산형 RISE를 통해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 (실적평가) 2차년도부터 전년대비 증가율로 평가	
	< 지표 산출식 >	
	<b>지표명</b>	<b>단위</b>
	<b>프로그램 참여기업 매출액 증가율 = (A-B)/B×100</b>	
비교연도 프로그램 참여기업의 매출액 (A)	백만원	
기준연도 프로그램 참여기업의 매출액 (B)	백만원	
<b>[통계자료 출처]</b> 대학에서 제출한 자료 활용		

## ⑥ 기업현장 문제해결 지원 실적

지표명	측정방식	
산출식	기업현장 문제해결 지원 실적 = ㉗×0.5+㉘×0.5	
㉗ 재직자교육 참여기업 수	[정의] 부산형 RISE를 통해 재직자교육에 참여한 기업의 수 < 지표 산출식 >	
	지표명	단위
	재직자 교육 참여기업 수	개
	[통계자료 출처] 대학에서 제출한 자료 활용	
㉘ 산업자문활동 수혜기업 수	[정의] 부산형 RISE를 통해 산업자문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은 기업의 수(중복제거) < 지표 산출식 >	
	지표명	단위
	산업자문활동 수혜기업 수	개
	[통계자료 출처] 대학에서 제출한 자료 활용(※ 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작성 지침 참고)	

## ⑦ 국제협력 및 우수 외국인재 유치 실적 증가율

지표명	측정방식	
산출식	국제협력 및 우수 외국인재 유치 실적 증가율 = ㉙×0.5+㉚×0.5	
㉙ 대학 주관 국제행사 개최 실적 증가율	[정의] 부산형 RISE를 통해 대학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역 내 국제행사* 유치 또는 개최 횟수의 증가율 * 발표자의 소속기관이 한국을 포함한 2개국 이상이면 국제행사로 인정(발표자의 국적이 아닌 소속기관 기준)	
	* (실적평가) 2차년도부터 전년대비 증가율로 평가	
	< 지표 산출식 >	
	지표명	단위
	비교연도 대학 주관 국제행사 개최 건수 (A)	건
	기준연도 대학 주관 국제행사 개최 건수 (B)	건
대학 주관 국제행사 개최 실적 증가율 = (A-B)/B×100	%	
	[통계자료 출처] 대학에서 제출한 자료 활용	
㉚ 외국인 유학생 수 증가율	[정의] 부산형 RISE를 통해 대학의 학위과정, 교육과정 공동운영, 연수과정에 있는 외국 학생 수의 증가율	
	* (실적평가) 2차년도부터 전년대비 증가율로 평가	
	< 지표 산출식 >	
	지표명	단위
	비교연도 외국인 학생 수 (A)	명
	기준연도 외국인 학생 수 (B)	명
외국인 유학생 수 증가율 = (A-B)/B×100	%	
	[통계자료 출처] 대학에서 제출한 자료 활용(※ 대학정보공시 작성 지침 참고)	

### ⑧ 성인학습자 참여 및 성과 증가율

지표명	측정방식		
산출식	<b>성인학습자 참여 및 성과 증가율 = A1×0.6+A2×0.4</b>		
성인학습자 참여자 수 증가율 및 참여 성인학습자 취·창업 증가율	[정의] 부산형 RISE를 통해 성인학습자의 참여자 수와 이를 통한 해당 인력의 취창업자의 수 증가율		
	* (실적평가) 2차년도부터 전년대비 증가율로 평가		
	< 지표 산출식 >		
	지표명	단위	비중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 참여자 수 증가율 (A1) = (B-C)/C×100	%	0.6
	비교연도 성인학습자 참여자 수 (B)	명	
	기준연도 성인학습자 참여자 수 (C)	명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의 취창업 증가율 (A2)=[(D+E)/(F-G)-(H+I)/(J-K)]/[(H+I)/(J-K)]×100	%	0.4
	비교연도 성인학습자 참여자 중 취업자 수 (D)	명	
	비교연도 성인학습자 참여자 중 창업자 수 (E)	명	
	비교연도 성인학습자 참여자(이수자) 수 (F)	명	
	비교연도 성인학습자 참여자(이수자) 중 기존 재직자(취·창업자) 수 (G)	명	
	기준연도 성인학습자 참여자 중 취업자 수 (H)	명	
	기준연도 성인학습자 참여자 중 창업자 수 (I)	명	
기준연도 성인학습자 참여자(이수자) 수 (J)	명		
기준연도 성인학습자 참여자(이수자) 중 기존 재직자(취·창업자) 수 (K)	명		
<b>성인학습자 참여 및 성과 증가율 = A1×0.6+A2×0.4</b>			
※ 참여자(이수자) : 학위과정 학생은 학점을 취득한 자, 비학위과정 학생은 이수증을 취득한 자			
[통계자료 출처] 대학에서 제출한 자료 활용			

### ⑨ 지역사회 현안해결 프로그램 운영성과 증가율

지표명	측정방식	
산출식	<b>지역사회 현안해결 프로그램 운영성과 증가율 = ㉓×0.7+㉔×0.3</b>	
㉓ 인문사회예술 기반 지역현안해결 프로그램 운영 실적 증가율	[정의] 부산형 RISE를 통해 인문사회예술 기반 지역현안해결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 증가율	
	* (실적평가) 2차년도부터 전년대비 증가율로 평가	
	< 지표 산출식 >	
	지표명	단위
	비교연도 인문사회예술기반 지역현안 프로그램 운영 건수 (A)	건
	기준연도 인문사회예술기반 지역현안 프로그램 운영 건수 (B)	건
<b>인문사회예술기반 지역현안 프로그램 운영 실적 증가율 = (A-B)/B×100</b>		%
[통계자료 출처] 대학에서 제출한 자료 활용		
㉔ 참여 지역민 만족도 증가율	[정의] 부산형 RISE를 통해 지역현안해결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민의 만족도 증가율	
	* (실적평가) 2차년도부터 전년대비 증가율로 평가	
	< 지표 산출식 >	
	지표명	단위
	비교연도 지역현안해결 프로그램 참여 지역민의 만족도 (A)	점
기준연도 지역현안해결 프로그램 참여 지역민의 만족도 (B)	점	
<b>지역현안해결 프로그램 참여 지역민의 만족도 증가율 = (A-B)/B×100</b>		%
[통계자료 출처] 대학에서 제출한 자료		

### ⑩ 대학 간 연계·협력 실적

지표명	측정방식	
산출식	<b>대학 간 연계·협력 실적 = ㉗×0.7+㉘×0.3</b>	
㉗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건수	[정의] 부산형 RISE를 통해 지역 대학 간 공유 협력을 통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건수 * 두 개 이상의 대학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의 교육과정 운영 < 지표 산출식 >	
	지표명	단위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건수	건
	[통계자료 출처] 대학에서 제출한 자료 활용	
㉘ 대학 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 건수	[정의] 부산형 RISE를 통해 지역 대학 간 공유 협력을 통한 연계 프로그램 운영 건수 < 지표 산출식 >	
	지표명	단위
	대학 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 건수	건
	[통계자료 출처] 대학에서 제출한 자료 활용	

### ⑪ 캠퍼스 내 지역혁신거점공간 활용률

지표명	측정방식	
산출식	<b>캠퍼스내 지역혁신거점공간 활용률 = ㉙×0.5+㉚×0.5</b>	
㉙ 캠퍼스내 입주기업 수	[정의] 부산형 RISE를 통해 대학 내 기업부설연구소,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창업보육센터를 제외한 대학 내부의 건물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을 포함한 수 < 지표 산출식 >	
	지표명	단위
	캠퍼스 내 입주기업 수	개
	[통계자료 출처] 대학에서 제출한 자료 활용(※ 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작성 지침 참고)	
㉚ 캠퍼스 내 시민개방 활용 건수	[정의] 부산형 RISE를 통해 대학 캠퍼스를 지역민에게 개방하여 활용한 건수 < 지표 산출식 >	
	지표명	단위
	캠퍼스 내 시민개방 활용 건수	건
	[통계자료 출처] 대학에서 제출한 자료 활용	

### ⑫ 대학 교육혁신 성과 달성률

지표명	측정방식	
산출식	<b>대학 교육혁신 성과 달성률 = A/B×100</b>	
계획 대비 대학 교육혁신 목표 달성률	[정의] 부산형 RISE를 통해 대학 교육혁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비율 < 지표 산출식 >	
	지표명	단위
	대학별 계획 대비 교육혁신 목표 달성률 = A/B×100	%
	대학별 교육혁신 성과 실적 (A)	
	대학별 교육혁신의 성과 목표 (B)	
[통계자료 출처] 대학에서 제출한 자료 활용		

## 참고자료 5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교육부훈령)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교육부훈령 제511호, 시행 2024. 12. 30.]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RISE’라 한다)”란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2. “RISE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RISE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다.
  - 가. “국고보조금”이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교부하는 예산을 말한다.
  - 나. “지자체 대응자금”(이하 “대응자금”이라 한다)이란 국고보조금과 대응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지역RISE센터에 교부하는 예산을 말한다.
  - 다. “그 밖에 대응자금”이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고보조금과 대응자금 이외에 지역 기업 등 유관기관이 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을 말한다.
4. “관리운영비”란 중앙RISE센터와 지역RISE센터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5. “지원 대상”이란 다음 각 목의 형태를 지닌 기관 중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상을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및 기타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이하 “대학”이라 한다)
  - 나. 협의체(대학, 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연구기관,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법인 등을 의미한다)
6. “중앙RISE센터”란 RISE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성과소관리·데이터관리 등에 관

한 사무를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지역RISE센터”란 지역의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 범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RISE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공정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지침을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 제2장 RISE를 위한 계획의 수립 등

제5조(RISE지원전략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RISE지원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RISE 지원전략은 제9조에 따른 RISE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RISE지원전략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RISE지원전략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RISE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RISE의 추진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RISE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RISE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4. RISE 예산에 관한 사항
5. RISE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지원에 관한 사항
7.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RISE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RISE기본계획의 수립)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학과 해당 지역의 동반성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RISE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협의를 통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초광역권 RISE기본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② RISE기본계획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학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의 장과 협력하여 수립하며, 제12조에 따른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RISE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RISE기본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RISE 안착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RISE 안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4.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RISE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RISE 추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8. 사업 추진을 위하여 범부처 연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RISE시행계획의 수립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RISE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RISE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장 추진체계

#### 제1절 중앙의 RISE 추진체계

제8조(중앙행정기관의 업무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RISE지원전략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별 RISE기본계획 및 RISE시행계획 수립 지원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금 확보·교부·배정 및 사업비 운용관리·점검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RISE 체계 운영의 적절성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6. 제9조에 따른 RISE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RISE 관계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8. 규제특례 사항 검토 및 관련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9. 중앙RISE센터의 지정·지정취소·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지역별 컨설팅에 관한 사항
1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RISE센터의 장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RISE기본계획과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대학,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RISE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RISE에 관한 중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RISE위원회를 둔다.

1. RISE지원전략에 관한 사항
2. RISE 관계 법령 등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시도별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중앙RISE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5. RISE 관련 시도 및 대학 컨설팅에 관한 사항
6. 대학의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7. 지역 간 RISE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중복·충돌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RISE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RISE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부장관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인의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대학과 지역의 발전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육계·학계·경제계·산업계·언론계 등 각계의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 관계자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⑥ 공동위원장 중 1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RISE위원회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효율적 논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RISE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중앙RISE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연구·성과관리·데이터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중앙RISE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RISE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RISE체계의 연구·조사·분석 및 성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
2. RISE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별 RISE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컨설팅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RISE센터 역량제고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연구시설·장비 도입심의에 관한 사항
7. RISE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교육부장관이 RISE체계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 중앙RISE센터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실시 계획 및 결과, 관리운영비 집행내역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앙RISE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 RISE지원전략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이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중앙RISE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주요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2. 제4항에 따른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⑥ 중앙RISE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RISE센터의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리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절 지역의 RISE 추진체계

제11조(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등)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RISE기본계획 및 RISE시행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대응자금 확보 및 사업비 운용관리·점검에 관한 사항
3. 사업수행 관련 협약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성과활용에 관한 사항
5. 범부처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연계·집행에 관한 사항
6. 제12조에 따른 지역RISE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수요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8. 규제특례 사항 발굴 및 관련 규정 개정 요구에 관한 사항
9. 지역RISE센터 지정·지정취소·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대학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관리를 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RISE센터의 장 또는 대학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지역RISE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지역별 RISE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역RISE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RISE기본계획과 RISE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 예산배분,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지역RISE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대학에 대한 규제특례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5. 지원 대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
6. 사업 운영, 예산집행, 성과관리 및 성과활용에 관한 사항
7. RISE를 위한 규칙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8. 제23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임면에 관한 사항
9. 지역RISE센터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하여 기관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RISE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RISE위원회 위원장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은 대학의 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지역RISE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의 장과 대학과 지역의 발전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육계·학계·경제계·산업계·언론계 등 각계의 전문가 중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교육계 전문가이어야 하고, 교육계 전문가 위촉 시 대학의 규모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하도록 한다.

⑤ 지역RISE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⑥ 공동위원장 중 1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지역RISE위원회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효율적 논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지역RISE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처리하거나 지역RISE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제1항제2호, 제6호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지역RISE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지역RISE센터의 지정·운영)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RISE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RISE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기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역RISE센터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RISE센터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역 내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자를 지역RISE위원회에 추천하고,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RISE센터의 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그 외 지역RISE센터의 운영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지역RISE센터의 업무 등) ① 지역RISE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RISE센터의 조직·구성 등 연도별 사업 운영을 위한 지역RISE센터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RISE기본계획 및 RISE시행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3. RISE기본계획 및 RISE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RISE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23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운영 지원, 제2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에 대한 컨설팅에 관한 사항
6. 지원 대상에 대한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사업 실적의 보고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8. 사업성과의 활용 및 사업 홍보 등에 관한 사항
9. 연구시설·장비 도입심의에 관한 사항
10. 타 부처 재정지원사업의 RISE체계 연계에 관한 사항
11. 사업공고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12. 사업수행 관련 협약 체결, 변경 및 해지 지원에 관한 사항
13. RISE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사업별로 평가·관리·지원을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지역RISE센터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실시 계획 및 결과, 관리운영비 집행내역 등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지역RISE센터의 장은 사업 관련 법령과 규정, RISE지원전략, RISE기본계획,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침이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④ 지역RISE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주요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RISE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리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3절 대학의 RISE 추진체계

- 제15조(사업수행 주체) ① 사업수행 주체는 대학(대학과 협의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업단, 참여기관으로 구분된다.
- ② 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학의 장(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과 협의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사업 추진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RISE기본계획 및 RISE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한 대학별 계획 수립 및 추진
  2.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 관리 및 지원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공간시설, 행정 등에 대한 지원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체규정 정비
  5. 사업비의 집행,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 ③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단이 별도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대학의 장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RISE기본계획 및 RISE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한 대학별 계획 작성·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④ 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학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기관(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의 공동 수행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공간시설, 행정 등에 대한 지원

3.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집행 관련 보고에 대한 협조 등

⑤ 대학의 장과 사업단장, 참여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 또는 협약체결 시에 정한 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⑥ 대학의 장과 사업단의 장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해당 사업의 목적 및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단의 설치·운영) ① 대학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대학별로 1개의 사업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연구, 인력양성, 기업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대학의 장은 사업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된 자원 및 인력을 관리하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수행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사업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퇴직금 등 근로조건, 의무와 책임, 계약해지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필요한 경우 사업단에는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참여기관의 조직·인력이 포함될 수 있다.

제17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장은 대학의 교직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명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대학 내 각 조직 및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의 임기는 사업의 총 사업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망, 공직임명, 퇴직, 질병 및 업무태만, 관리소홀, 기타 사유로 사업단장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학의 장은 사업단장을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RISE센터의 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8조(협의회 구성) ① 대학은 원활한 사업 수행과 대학,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RISE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 추진을 위한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장 사업운영 및 추진

제19조(사업공고)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기본 사항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사업기간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기한
3.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배분 기준 및 절차, 일정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30일 전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의 신청) 사업수행 주체가 되고자 하는 대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기간)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기간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의 특성과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평가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사업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RISE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사업 예산배분 및 지원 대상 결정) ① 지역RISE센터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신청한 대학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23조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담아 지역RISE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③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수행 주체를 확정하여 지역RISE센터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역RISE센터의 장은 이를 대학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RISE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사업수행 주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대학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역RISE센터의 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의 절차 및 방식은 지역RISE센터의 장이 정한다.

제23조(전문위원회) ① 사업의 평가·관리·지원 업무 중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RISE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역RISE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사업 예산배분·관리·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2. 성과관리 등에 관한 주요 사항
3. 제24조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4. 보조금 반환 및 참여제한 등 제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사업 관리를 위하여 지역RISE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학계, 교육계, 경제·산업계, 법조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지방 행정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중에서 지역RISE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도 부단체장 및 지역RISE센터의 장 등을 당연직으로 포함할 수 있다.
- ⑤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역RISE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평가위원회) ① 지역RISE센터의 장은 사업 예산배분 및 사업관리 등의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학계, 교육계, 경제·산업계, 연구기관 관계자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지역RISE센터의 장이 위촉하고, 이해관계자의 배제 등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중앙 RISE센터에서 제공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문가 위원 명단 중에서 구성하여야 한다.
- ④ 평가위원회의 운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RISE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제척)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평가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평가 또는 제재 대상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2. 평가위원회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평가 또는 제재 대상 대학에 개별적인 컨설팅 등을 시행한 경우
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관계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의 제재를 받은 자
4. 그 밖에 평가위원회 위원이 평가 또는 제재 대상 대학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의 제외 결정이 있는 경우

제26조(협약의 체결)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이 확정된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과 협업적 관계를 명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 사업기간 및 협약 당사자
2. 사업 계획 및 성과 목표
3. 총사업비, 연도별 사업비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RISE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 협약을 사업연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 대학은 협약에 따라 지역의 혁신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약사항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할 수 있다.

④ 사업 협약서는 별지 서식을 따르며, 세부 사항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7조(협약의 변경)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대학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과제의 연차·중간·종합평가 결과 및 컨설팅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역RISE센터의 장이 사업수행 상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 대학의 장에게 변경하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협약의 해지)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대학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학이 제26조제1항 각 호의 주요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대학 또는 사업단이 허위 자료 제출, 청탁, 외부 압력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경우

3. 사업비 유용·횡령 또는 부정·비리 발생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학 또는 사업단이 중대한 법령 위반을 한 경우

4.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학 또는 사업단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부도·법정관리·폐업·폐교 등의 사유로 대학의 지속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6. 대학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7. 그 밖에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상황 변화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대학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약 해지 통보에 대해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절차, 방식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④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하여 최종 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협약이 해지된 대학의 장은 협약 해지 최종 확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역RISE센터의 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지원받은 국고지원금(발생이자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⑥ 지역RISE센터의 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참여·전담 직원 퇴직금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⑦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RISE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반환받은 사업비를 다른 대학 또는 사업단에 지원하거나 그 밖의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장 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및 집행

제29조(사업비) ①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는 제21조의 사업기간 동안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비의 사용 용도는 별표 2를 따르며, 항목별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한도와 비율 등 사업비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지침으로 정한다. 다만 지침의 범위 안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재정사정,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방식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최소 두 차례 이상 나누어 대학에 교부할 수 있다.

제30조(보조금 등의 예산 편성) ①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대응자금, 그 밖의 대응자금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서 요구하는 대응자금을 현금으로 국고보조금 대비 일정비율 이상 매칭·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31조(보조금 교부 신청)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역RISE센터의 장과 대학의 장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경비, 집행 계획, 그밖에 필요 사항을 적은 교부신청서에 보조사업계획서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사업신청을 대학의 장의 교부신청으로 볼 수 있다.

제32조(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 ① 교육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광역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정 내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내용 적합 여부
2.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RISE 기본계획 및 RISE시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3.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4. 대응자금 확보 여부
5.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
6. 사업비 산정의 착오 여부
7.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지역혁신사업의 안착지원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포함 여부

② 교육부장관은 보조금 교부신청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예산배분 등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2. 사업 목적 및 내용의 광역지방자치단체 RISE기본계획 및 RISE시행계획과의 부합성
3. 사업예산 책정의 적정성
4.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절성
5. 그 밖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포함 여부

④ 교육부장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수행상황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금액 및 교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3조(보조금의 집행)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육부장관의 처분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 및 대응자금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변경 통보)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정의 변경 등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변경 통보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그 검토 내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사업비의 이월)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이월하는 경우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1조에 따른다.

② 국고보조금의 이월이 있는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보조금이 이월된 연도의 1월 15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이월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대학의 사업비 집행) ① 대학의 사업비는 해당 대학의 대학본부 또는 산학협력단 등 중앙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학은 사업비 항목 내 또는 항목 간의 예산 변경은 대학 등의 내부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RISE사업에서 정한 예산 편성·집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과급 및 간접비는 증액할 수 없다.

③ 사업비는 사업단 또는 중앙관리부서 등이 작성하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지출결의서를 통해 집행하고, 그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전자문서 형태 가능)는 사업기간 종료 후 최소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④ 대학 또는 사업단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사업비의 입·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해 별도 계좌를 개설·관리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⑥ 사업비는 보조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지출한다.

⑦ 사업비 회계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RISE센터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장 성과관리

### 제1절 중앙의 RISE 성과관리

제37조(연차점검) ① 교육부장관은 사업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의 환류를 통한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며 지역과 대학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연차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을 토대로 지역별 연차보고서를 작성

하고 이를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차점검 시 제3항에 따른 연차점검보고서 및 사업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연차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RISE센터의 장에게 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해 업무를 위탁받은 중앙RISE센터의 장은 평가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RISE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연차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RISE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중간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사업 수행 중간에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에 의한 연차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중간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중간평가의 시행을 위하여 제3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종합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총 사업기간 동안의 사업운영 성과 등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종합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종합평가의 시행을 위해 제3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절 지역의 RISE 성과관리

제40조(연차평가)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수행 주체의 사업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의 환류를 통한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해야한다.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제37조에 따른 연차점검 계획을 반영하여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사업수행 주체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사업수행 주체는 제2항에 따른 연차평가 계획을 토대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연차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 연차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RISE센터의 장에게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해 업무를 위탁받은 지역RISE센터의 장은 평가 결과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RISE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연차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이의제기) ① 사업수행 주체는 제40조에 따른 연차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성과의 활용) ① 대학, 사업단, 참여기관 등 사업수행 주체는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사업수행 주체는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기자재, 재료, 문헌, 지식재산권 등 유·무형적 결과물은 사업수행 주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업수행 주체는 교육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앙RISE센터 및 지역RISE센터로부터 해당 결과물에 대한 자료 및 점검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라도 국고보조금 및 수익금의 적정집행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점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④ 지역RISE센터와 사업수행 주체는 사업의 홍보, 프로그램 운영, 참여대학 모집, 성과의 게재(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성과를 활용한 논문게재 등) 시에 교육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사업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 제7장 보칙

제43조(업무의 위탁) ① 이 훈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중앙RISE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훈령에 따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지역RISE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보고의무)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교육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 현황, 사업단의 구성 현황, 사업비 집행현황, 사업 실적·성과 등 필요한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해석)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46조(정보보안) ① 중앙RISE센터, 지역RISE센터, 사업수행 주체 등은 사업운영에 있어 정보보안 정책마련, 정보보안 교육, 통신보안, 인터넷 및 PC 보안, 서버보안, 전자정보보안, 홈페이지 운영·보안 등을 통하여 정보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중앙RISE센터 및 지역RISE센터는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서버 구축 등의 플랫폼 구축시 정보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47조(비밀유지의무) 교육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앙RISE센터, 지역RISE센터, 관련 위원회 소속 위원, 사업수행 주체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교육부장관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8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지원 대상의 범위(제3조)**

1.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등을 충족하는 「고등교육법」 상 학교
2.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나 제1호에 따른 학교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RISE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지원 대상으로 정한 각 목의 기관 또는 학교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나.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 다.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
  -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마.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바.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사.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 아.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고등교육기관

「농수산대학교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 「전통문화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제3사관학교, 「외국교육기관법」에 의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외국교육기관 등

자. 개별 법률에 따라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

**별표2**

**사업비 편성 항목**

항목	사용용도
인건비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교원 및 직원 등 인력의 인건비 비용(퇴직금, 4대 보험료, 보직수당, 성과급 포함) 2) 그 밖에 RISE사업 운영을 위한 조교 등 보조인력에 대한 보수
장학금	1) RISE사업 관련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자 보조금 2) RISE사업 관련 (전문기술)석사박사학위과정 학생 및 수료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자 보조금 3) RISE사업 관련 그 밖에 성인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 보조금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1)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비: 전공·비전공·교양 등 신규 교과목 개발, 신규 교재개발, 신규 강의법 개발 등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 2)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비: 정책연구비, 강의로, 원고료, 교육학술활동비, 실험실습비 등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국제화 경비: 국제화를 위한 교류 경비,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 국외 교육·연구 활동 관련 각종 경비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1) 강의실·실험실·실습실 등 RISE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연구공간에 대한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2) 시스템 구축 용역비 또는 시스템 관련 기자재 구입 등 RISE사업에 부합하는 교육·연구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교육·연구·산학협력 목적으로 활용되는 실험·실습·시험·분석·계측·생산장비 및 기자재의 구입·리스·임차·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지역 연계·협업 지원비	1) 기관 간 연계·협업 활동, 지식·학·연 정보 공유,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설계·운영 등 지자체 또는 지역 내(간) 기관과의 연계·협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문제 해결 등에 필요한 비용
기업 지원·협력 활동비	1) 산학공동 기술·지식 개발비: 산학 공동 기술·지식 개발 비용 2) 산학협력·직업평생교육활동비: 애로기술 및 컨설팅 지원, 재직자 교육, 융·복합 기술사업화 등 기업·지역·협력기관 지원 비용, 산학연계 공동 세미나·포럼 추진·참가비 또는 산학협력·직업평생교육협의체 운영비 등 산학협력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성과 활용·확산 지원비	1)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 DB 사용료 등에 필요한 비용 2) 기술이전·사업화 비용: 창의적 자산 발굴 및 기획비용, 산학공동 기술·지식 사업화 비용(시제품 제작 및 검증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비, 사업화 분석 및 투자유치, 대학·협력기관 간 기술사업화 융·복합 프로그램 추진비, 학생 기술·지식 창업 프로젝트 비용 등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비용 3) 성과 공유확산비: 세미나·포럼 개최비, 위원회 수당 등 지식·학·연 협력 성과 공유확산을 위해 필요한 비용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여비, 교육활동지원비, 도서 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신규 채용인력 공개임용 시 필요 경비 등 RISE사업 관련 교육·연구·산학협력 등의 활동 수행 시 부가적으로 필요한 비용
간접비	교육연구단, 산학협력단 등 RISE사업의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



제4조(사업비) OORISE센터의 장은 OO대학교 총장이 대표하는 산학협력단 등에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급한다. 사업비 규모와 지급 시기 및 방식은 OORISE 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권한과 책임) OORISE센터의 장, OO대학교 총장, 산학협력단장,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제6조(지원 조건) OO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장,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 및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사업신청 적격 요건과 OORISE센터의 장이 정한 지원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목표) OO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장,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은 사업 신청 시 자율적으로 제출한 사항에 관한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의 관리) OO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장,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은 '운영규정' 및 OORISE센터의 장이 정한 지침·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변경) OORISE센터의 장은 OO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 이 정한 바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지) OORISE센터의 장은 OO대학교 총장, 산학협력단장, 또는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이 주요협약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영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수혜 제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규정'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협약해지, 사업비 삭감 및 환수, 평가 시 반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제출 및 보고의 의무) OORISE센터의 장은 사업관리를 위해 필요시 관련자료 등의 제출요구, 사업단장 등의 출석요구, 사업단에 대한 현지방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OO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장,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신청서 등의 공개) OO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장,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은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를 '운영규정' 또는 OORISE센터의 장이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 본 협약 및 '관리운영 규정' 등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OORISE센터의 장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OORISE센터의 장, OO대학교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OORISE센터장

직 인

OO대학교 총장

직 인

OO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대학 또는 사업단(또는 사업팀)장

소속 :

직급(위) :

성명 :

(인)

별첨 : 0000년 OO대학교 △△ RISE 사업 계획서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전략

2024. 12.

교 육 부  
[인재정책실]

# 목 차

I. RISE 지원전략 개요 .....	1
II. RISE 비전과 목표 .....	4
III. RISE 지원전략 주요 내용 .....	5
1) 추진체계 구축 · 운영 .....	5
2) 계획 수립 .....	14
3) 사업 운영 .....	21
4)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운영 .....	29
IV. 향후 추진일정(안) .....	33

# I . RISE 지원전략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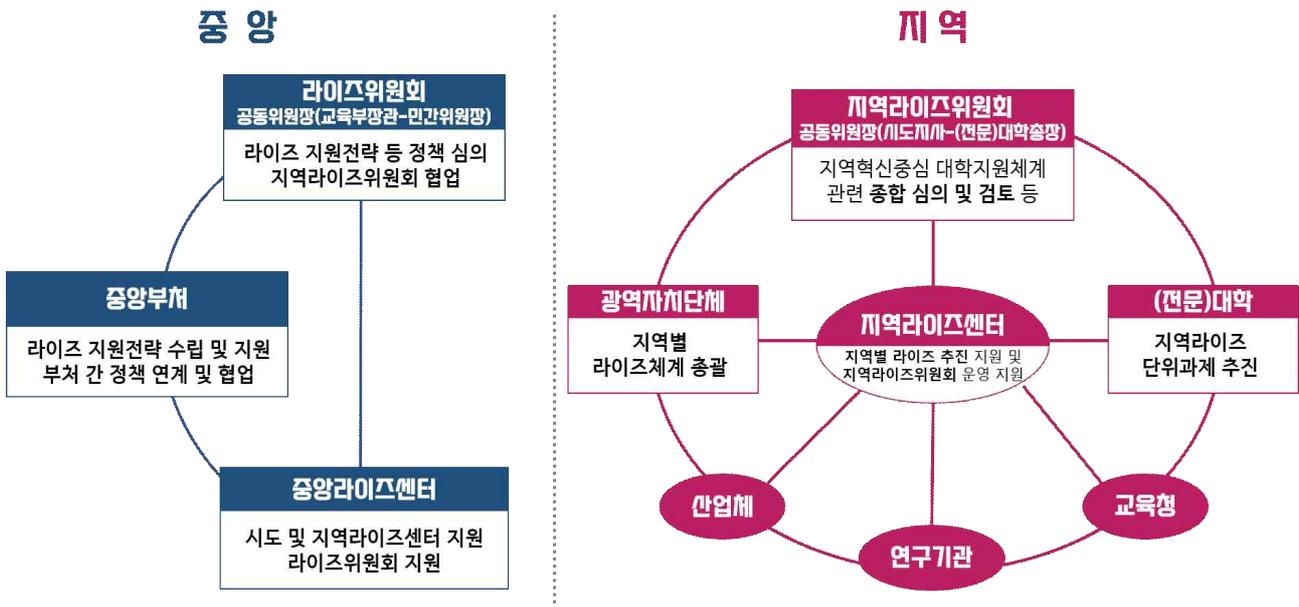
## □ 구성

- ①중앙 및 지역 단위 RISE 추진체계 구축·운영, ②지역별 RISE 계획 수립, ③사업 운영, ④성과관리 체계 구축·운영의 4개 영역으로 구성

## □ 추진체계 구축·운영 지원전략

- (지역) 지역RISE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도(지역RISE센터)·대학·산업계·교육청 등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내 거버넌스를 구축·운영
  - ※ 「고등교육법」 개정 및 「RISE훈령」 제정으로 지자체장-지역(전문)대학 총장 공동위원장 체제, 지역대학 총장·산업계 등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거버넌스 마련
  - 지역RISE위원회는 지역의 RISE 기본계획, 사업 수행 대상 선정 평가결과, 성과관리 등 RISE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 (중앙)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시대위·대교협·전문대교협·시도지사협의회 등 유관기관 중심으로 RISE위원회를 구성·운영

<참고 : 중앙-지역 RISE 거버넌스 구조도>



- (협력체계) ▲지역 주도 사업 기획·설계 ▲지역라이즈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강화 ▲지역 주체 간 수평적인 협의 체계 구축·운영 등에 중점

## □ 계획 수립 지원전략

- (종류) 수립 주체별로 지역이 수립하는 ①RISE 기본계획(5개년), ②연도별 시행계획과, 교육부 수립 RISE 지원전략(5개년)으로 구분
  - ①기본계획은 지역RISE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교육부에 제출
  - ②연도별 시행계획은 실제 '25년부터 RISE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으로 활용 ※ 지역RISE센터는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 (중점사항) 각 시도는 대학과 협력적·수평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전략, 대학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
  - '인재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을 위해 RISE를 플랫폼으로, 교육부 포함 범부처 및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연계
  - 의대 교육혁신 지원, 지역 협력 기반 늘봄 프로그램 지원 계획 및 '25년 일몰되는 사업들의 지역 협업방안을 각 지역별 계획에 반영

## □ 사업운영 지원전략

- (운영주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 ※ 각 지역대학, 기업, 지역협의체 등이 협력하여 운영
  - (사업기간) 2025년 3월 ~ 2030년 2월 (5년)
  - (지원대상) ①「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기관평가인증\*(조건부 인증 이상)을 받은 학교 및 재정진단\*\* 결과 재정건전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 \* 일반대·전문대 기관평가인증,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원격대학 인증·역량진단
    - \*\* 단,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은 사립대학에만 해당('25년부터 재정진단을 희망하는 원격대학, 대학원대학, 각종학교 등은 재정진단 이후 단독지원 검토)
  - ②기관평가인증 또는 재정진단의 미적용 대상(폴리텍·출연연 등) 이거나, 통과하지 못한 학교의 경우에도 지역의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①의 대학과 협의체 구성 후 지역RISE위원회 결정 시 사업비 지원 가능
  - ③기업 등의 경우에도 ①의 학교와 연계하여 사업 참여는 가능하나, 사업비 직접 집행은 불가
- (지원범위) 광역지자체 내 소재 대학 지원
  - ※ 지역RISE계획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타 시도 소재 대학도 지원 가능
- (예산 지원) 「보조금법」 의거,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지원

□ **성과관리 체계 구축·운영 지원전략**

- **(성과관리 목적)** RISE 사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지역 간 협력적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추진 방향)**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해 교육부는 핵심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지역은 자율성과지표를 지역 주도로 수립하여 중앙 및 지역의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대학지원 추진
- **(성과관리 구조)** 지역 주도의 자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자체평가(지자체→대학, 매년 실시)를 기본으로 하며,
  - 지역은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평가를 통해 단위과제별 목표와, 프로젝트별 목표의 달성도를 자체 점검하고 환류 실시
  - 교육부는 연차점검을 통해 지역별 RISE 진행상황 및 자체평가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중간(2년차) 및 종합평가(5년차)**를 통해 지역별 핵심성과지표의 달성도를 평가하여 예산배분 및 컨설팅 실시
- **(성과지표 구성)** 지역은 성과관리를 위한 자율성과지표를 설정
  - 교육부는 지역별 RISE 성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통 지표로서 핵심성과지표를 제시하되, **중간·종합평가**에서만 평가

※ ④~⑥ 핵심성과지표는 종합평가시에만 활용

핵심성과지표 구성(안)
① 지역별 대표 과제의 성과목표 달성률
② 지산학연 협업 실적 증가율
③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실적 증가율
④ 지역정주 취업 증가율
⑤ 지역혁신체제 만족도 증가율
⑥ 대학의 지역경제 영향력 증가율(IMPACT 평가)

## II. RISE 비전과 목표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지역의 핵심 인적·물적자원 집약체인 대학이 협력적 동반관계를 구축하여 지역 혁신·발전을 이끄는 체계

#### 비전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

#### 목표

“대학이 살리는 지역”  
대학의 지역발전 허브화

+

“지역이 키우는 대학”  
경쟁력있는 지역대학 육성

#### 주요 내용

##### ①추진체계 구축·운영

- ▶ 지역 내 수평적 거버넌스 및 자율적 지역혁신체제 구축
- ▶ 중앙은 RISE를 플랫폼으로 한 범부처 협업체계 조성

##### ②계획 수립

- ▶ 지역발전전략 연계, 대학 강점·특성화분야 적극 활용
- ▶ 범부처 연계, 중앙·지역 협업, 초광역 과제

##### ③사업 운영

- ▶ 지자체 20%+α 매칭
- ▶ 칸막이 없는 대학 예산 집행

##### ④성과관리 체계 구축·운영

- ▶ 지역별 자체평가 중심 성과관리
- ▶ 교육부는 공통 핵심성과지표 관리

#### 정책 기반

##### 지원중심으로 교육부 역할 대전환

- 규제개혁 대학 자율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편
- 재정개혁 혁신을 뒷받침하는 두터운 대학 지원
- 구조개혁 지역 사회를 위한 대학 역할 전환 지원

##### 범정부적 지역주도 정책 강화

- 지역소멸 방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본격화
- ※ 일자리, 지역재생, 문화, 산업, R&D 등 전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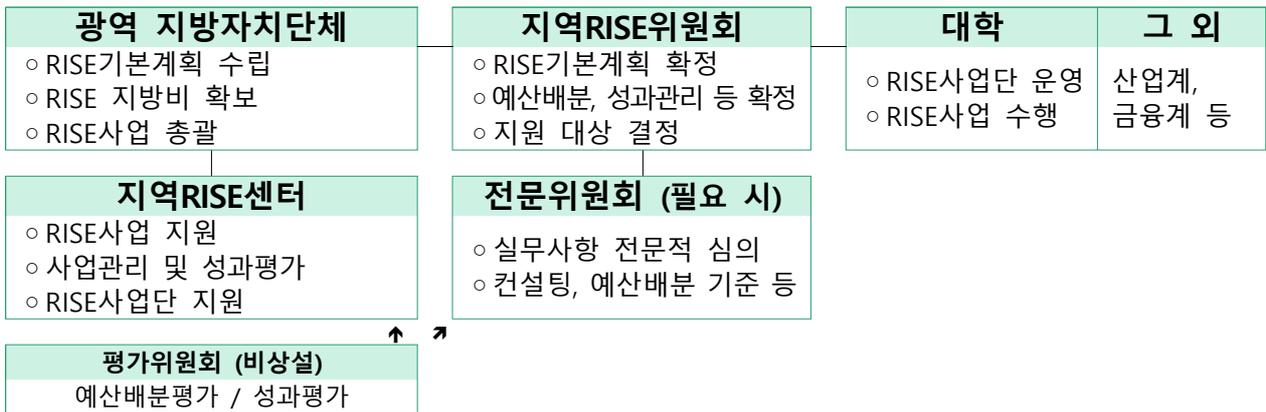
### Ⅲ. RISE 지원전략 주요 내용

#### 1 추진 체계 구축·운영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훈령)」(안) 기반

#### ① 지역 및 대학의 추진체계

◆ 지역RISE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자체·지역RISE센터·대학·산업계·교육청 등 지역혁신을 이끄는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 내 거버넌스를 구축·운영



○ (지역RISE위원회) 지역의 RISE 추진과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

※ 각 지역은 훈령 제정 및 「고등교육법」 개정 전이라도 지역라이즈위원회 조속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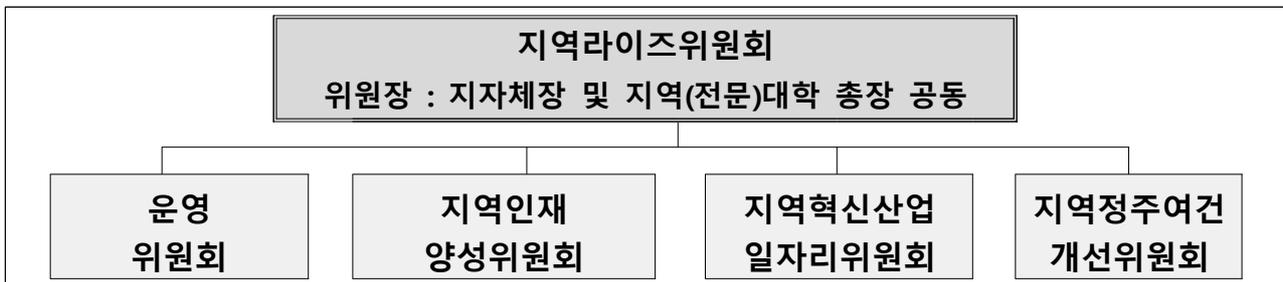
- <구성> 지자체·대학의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장과 지역(전문)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교육계 위원을 1/2이상 위촉

※ 지역 내 대학의 유형·규모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교육계 위원을 위촉

- <기능> 지역의 RISE 기본계획, 사업 수행 대상 선정평가 결과, 성과관리 등 지역 내 RISE 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지역라이즈위원회 심의사항의 실무 검토 등을 위해 전문위 운영 가능

#### <지역RISE위원회 구성 예시>



- **(지자체)** 지자체 내 분산되어 있는 대학 관련 업무 담당부서를 통합·재배치하여 RISE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 운영
  - 시도별 조직·정원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되, 총괄 부서는 최소 과 단위 이상 및 관련성이 높은 업무를 총괄부서와 동일한 실·국으로 편제\*할 것을 권장
    - \* 예를 들어, 산업부 사업을 시도에서 RISE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이를 담당하는 지자체 부서와 RISE전담부서 간의 정보공유, 성과지표 공유 필요
  - RISE 계획 이행을 위한 총괄담당자(팀)를 지정하며, 산학협력, 인재 양성, 평생교육 등 시·도 대학지원 업무의 경험이 있는 자로 배정
    - ※ 필요 시 담당자를 전담관 또는 전문관으로 지정하여 장기간 업무 수행 지원
  - 교육개혁지원관 배치 시도는, RISE 추진 관련 자문, 시도-교육부 간 소통, 시도-대학 간 소통 등에 지원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
    - ※ '25년 전국시행에 맞춰, 교육개혁지원관의 전 지역 배치 추진 검토(현재 7개 시범지역)
- **(지역RISE센터)** 지역 대학 및 산업체, 기업과의 협력·지원사업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정 또는 신설한 비영리법인
  - ※ 지역 내 기관과의 협력·소통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발전전략과 RISE 계획을 연계하고, 대학 혁신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선정
  - 지역의 RISE 계획 수립 지원, 대학의 RISE 사업 수행 관리, 사업비 집행·정산, 성과관리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

**<지역RISE센터 조직 구성 예시>**



- ※ 필요 시 협력기관을 지정하여 협약을 통한 사업관리 협업 가능
- 지역 내 지역·대학혁신 관련 지원조직(지역상의·(전문)대교협·평생교육원·지역인적자원위 등)과 협의체 운영 시 적극 참여·연계 권장
  - ※ 필요 시 지역 내 대학, 혁신기관 등과 인사교류를 통해 협업체계 내실화

- (대학) 총장의 리더십 하에 비전·발전전략 등을 고려한 RISE 추진
  - 대학 내에서의 분절적 사업운영 방지를 위해, 학교가 수주하는 단위과제 수와 무관하게 1교당 1개의 RISE 사업단\*을 구성
  - \* 예) 사업단은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해 대학 본부에 두고, 교무위원이 사업단장 겸임
  - ※ 글로벌대학은 RISE 체계에서 지역-대학 혁신 선도 역할을 수행하므로, 글로벌대학과 RISE사업이 통합적으로 일관성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 구성 (예: 글로벌대학사업 단장이 RISE사업단장 겸임/글로벌대학사업단 하위 조직으로 RISE 사업팀 구성 등)

## 2 중앙 단위 추진체계

◆ RISE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부 포함 중앙부처·중앙라이즈센터·지방시대쫁·대교협·전문대교협 등이 협력하여 지역의 RISE 추진 조정·지원

- (RISE위원회) 중앙단위 RISE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
  - <구성> 대학과 지역의 발전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진 교육계·산업계등 각계 민간 전문가와 기재부·과기정통부 등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민간위원 중 1인의 공동위원장 구조
  - <기능> RISE 지원전략, 규제 개선, 성과관리, 예산배분, 컨설팅 등 전국에 적용될 RISE 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 라이즈위원회 심의사항의 실무 검토 등을 위해 전문위 운영 가능
- (중앙RISE센터) RISE의 전 지역 안착을 위한 운영 지원 및 중앙단위 각종 성과관리·모니터링·조사·연구·데이터관리 등을 수행
  - <지역지원> 지자체 및 지역RISE센터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가이드라인 제공, 워크숍, 지역별(권역별) 전담인력 배치 등 추진
  - <중앙단위> 교육부의 지자체 대상 성과평가 위탁 운영, 전국 단위 관리를 위한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산학연협력 EXPO 등 성과확산
- (중앙부처)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RISE를 중심으로 한 지역 내 정책 연계 지원

<참고 : RISE를 통한 범부처 협업 사례>

<범부처 사업의 RISE 연계 유형>

- ①유형 : 각 지역은 '범부처 정책메뉴판'에서 제시한 부처별 사업 중 지역 혁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활용하여, RISE 계획의 단위과제를 기획
  - ②유형 : 1유형+지역RISE센터에서 범부처 예산집행 및 사업관리 협업
  - ③유형 : 2유형 + 범부처 사업의 자치단체 보조 전환 및 지역자율 집행
- ※ 중앙부처 인재양성사업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단계적 이관 협의

1] **산업+교육** 지역산업활력펀드 연계 맞춤형 인재양성(CUBE\*) : 연계 1유형

\* Customized, University-Based Education and Training

- ▶ (필요성) 자금 및 인력수급 여건이 불리한 지역 소재기업의 경쟁력 제고 필요
- ▶ (내용) 산업부는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해 기술사업화를 위한 펀드(1,100억)를 공급하고, 대학은 기업과 협의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 지역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하고, 기업의 연구설비와 전문인력도 교육에 활용해, 수료 이후 즉시 채용가능한 현장 중심 인력양성
- ▶ (추진체계) 지자체(지역RISE센터)가 동 사업 내용을 반영한 RISE 계획 과제를 기획하고, 추진 의사가 있는 대학-기업 컨소시엄 선정·성과관리 등 진행

[참고] 사업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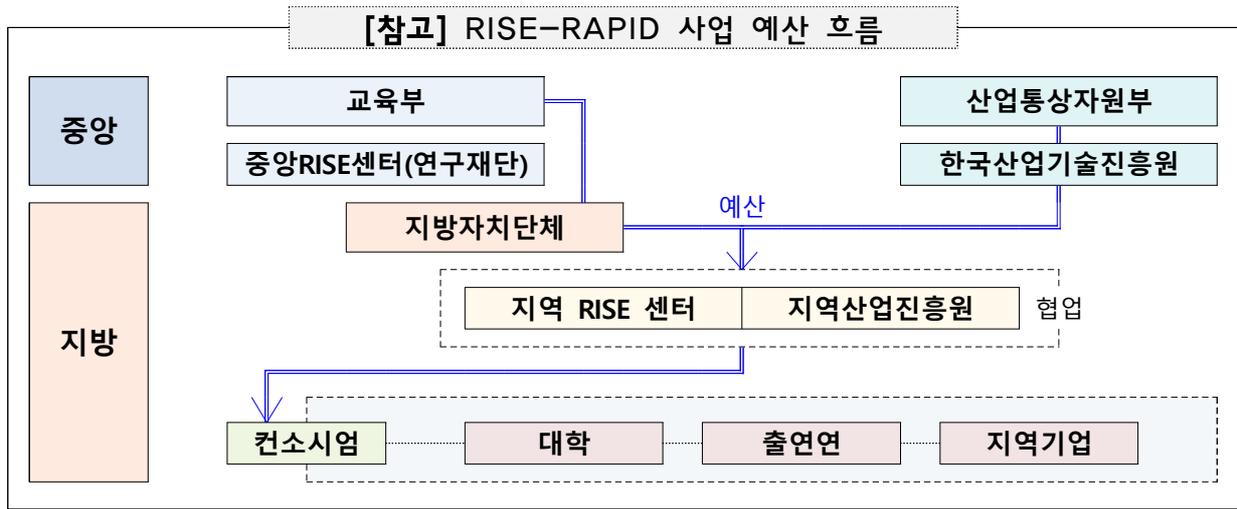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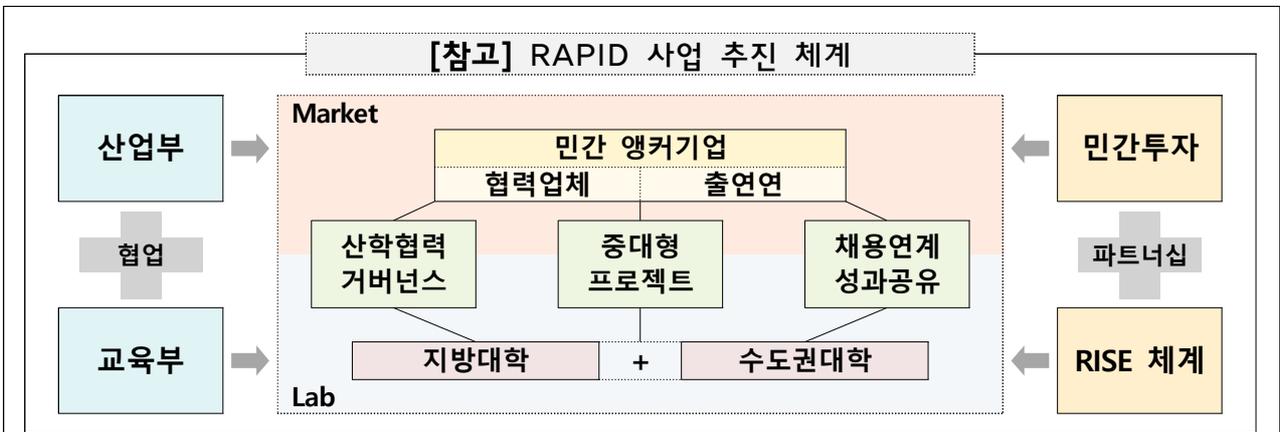


2] **산업+교육** 지역앵커기업-지역대학 전략기술공동개발(RAPID\*) : 연계 2유형\*\*

\* Regional Ancorcompany-Academy Partnership Innovation Development

\*\* 지역RISE센터와 지역산업진흥원이 사업을 공동 관리(예산집행체계 연계 추진)

- ▶ (필요성) 차세대 혁신제품 개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지역의 혁신주체인 지역대학의 연구역량 제고 및 대학-지역기업 간 공동 R&D를 증진할 필요
- ▶ (내용) 지자체가 지역 전략산업을 바탕으로 혁신제품 개발 수요를 발굴
  - 지역 대학·기업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중대형 기술개발(예: 항공기 관련 중소형 엔진)을 추진
- ▶ (추진체계) 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완제품(시스템) 단위 R&D를 RISE 체계 내 수행



**③ 과기+교육 학연 플랫폼 중심의 지역혁신기관 벽허물기 : 연계 1유형**

- ▶ (필요성) 지역 대학과 출연연은 지역혁신을 위한 핵심 주체이나, 자발적 협력 유인이 부족하여 학·연 공동 시너지 창출 저조
- ▶ (내용) 지역대학과 출연연 주도로 지속가능한 학·연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고도화 지원
  - 권역별 학·연 협력 플랫폼 사업단이 중점 지역혁신 분야를 설정하여 분야별 인력양성, 신기술 육성, 기술사업화 활동을 추진
  - '대학-출연연 간 벽허물기'를 통해 개방형 인력교류 등 대학과 출연연 간 기관 차원의 협력 확대, 학·연협력플랫폼의 RISE 연계 등 협업 강화 추진
  - 대학·출연연 등 혁신 주체가 협력하여 대학부설연구소를 세계적 수준의 국가 연구소(NRL 2.0)로 육성
- ▶ (추진체계) 지자체(지역RISE센터)와 협력하여 학연협력플랫폼 사업의 RISE 연계를 추진하고, 대학-출연연 벽허물기, NRL2.0등 부처간 협업 강화 추진

**④ 중기+교육 지역주력산업 인재양성 및 기업육성 연계 : 연계 1유형**

- ▶ (필요성) 레전드 50\*의 다양한 기업지원 수단\*(자금, 제조혁신, 판로 등)과

**RISE의 인력양성 체계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부터 기업성장까지 연계 지원**

※ 레전드(Region+end) 50+ 프로젝트 : 여러 기업지원 수단(7개 사업)을 연계한 프로젝트 하나로 지역기업 지원을 끝내어, 우리 경제에서의 중소기업 비중을 50% 이상 달성하도록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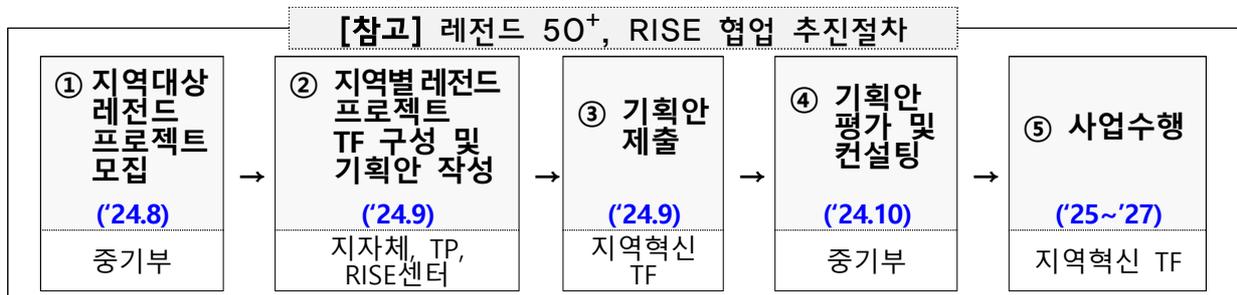
<레전드 50+ 연계 사업 분류 및 '24년 예산 (단위 : 원)>

분야	사업명	'24 예산	분야	사업명	'24 예산
컨설팅	중소기업혁신바우처	140억	수출	수출바우처	100억
창업·성장	창업중심대학	100억	사업화	지역주력산업기업지원	110억
제조혁신	스마트공장	330억		지역혁신생태계조성	10억
정책자금	중진기금 정책자금	2,000억	계		2,790억

▶ (내용) 지역주력산업에 특화된 인재양성 및 기업육성 추진

- [중기부] 레전드 50+ 2.0 사업에 지자체별 TP-RISE센터 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에서 레전드 프로젝트 기획시 인재양성+기업지원을 반드시 연계하여 제안
- [교육부] 중기부에서 발굴한 지역주력산업에 특화된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 과정을 RISE체계내에서 운영하도록 RISE센터와 TP간 협의회 구성

▶ (추진체계) 중기-교육부 공동 총괄하에 지역 주도의 '레전드 50+ 2.0 프로젝트' 수립·실행



⑤ **중기+교육** 지역혁신선도기업 R&D 협업 : 연계 1유형

▶ (필요성) 개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에서 벗어나, RISE 체계와 협업하여 지·산·학·연 협력생태계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혁신을 도모

\* 그간 R&D는 개별 기업 위주로 운영되어, 지역-중소기업 대상 R&D는 동 사업이 유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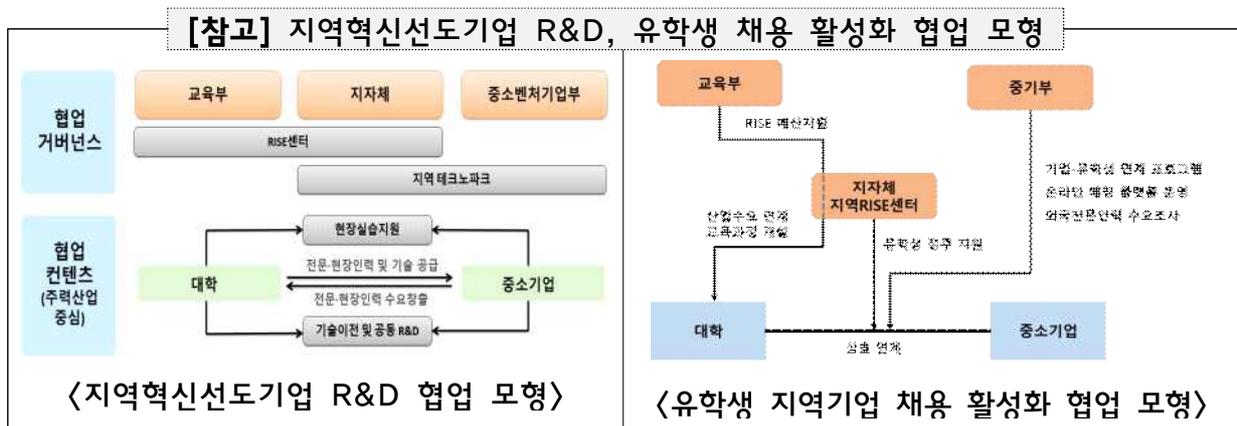
▶ (내용)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대학, 대·중견기업,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 R&D를 수행하는 ‘지역혁신선도기업 R&D’ 신설(’25~)

\* 사업 유형 : ① 컨소시엄형(지자체+중소기업+대학, RISE 연계) ② 일반기업형(단일 기업 단위)

- [중기부] 컨소시엄형 과제 기획시 대학 참여가 필수이며, RISE 참여 대학 등은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기술이전·공동 R&D, 현장실습 등 수행

- [교육부] RISE 참여 대학이 관내 선도기업과 공동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RISE센터 등이 지역 과제 공모시 관련 내용을 포함

▶ (추진체계) 지역별 (地)지자체-(産)중소기업-(學)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 ‘대학發 혁신’과 ‘선도중소기업發 혁신’ 간 시너지 창출



**6 중기+교육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기업 채용 활성화 : 연계 1유형**

▶ (필요성)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취업수요와 지역기업의 구인 수요는 증가하나, 구인·구직 정보 부족, 수요·공급 미스매칭 등이 외국인 유학생 활용에 걸림돌

▶ (내용) 대학에서 양성된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기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구인·구직 매칭, 유학생의 역량 강화 등을 RISE 중심의 협업 과제로 추진

- [중기부] 유학생 온라인 매칭 플랫폼 개설(’24.하), 직무 이해도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유학생 연계 프로그램 신설(’25.), 수요기반 외국인 유치활동 지원

- [교육부] 지역 대학의 유학생 교육과정을 계약학과·주문식교육과정 등 산학협력 중심으로 개편하여 지역기업과 취업 연계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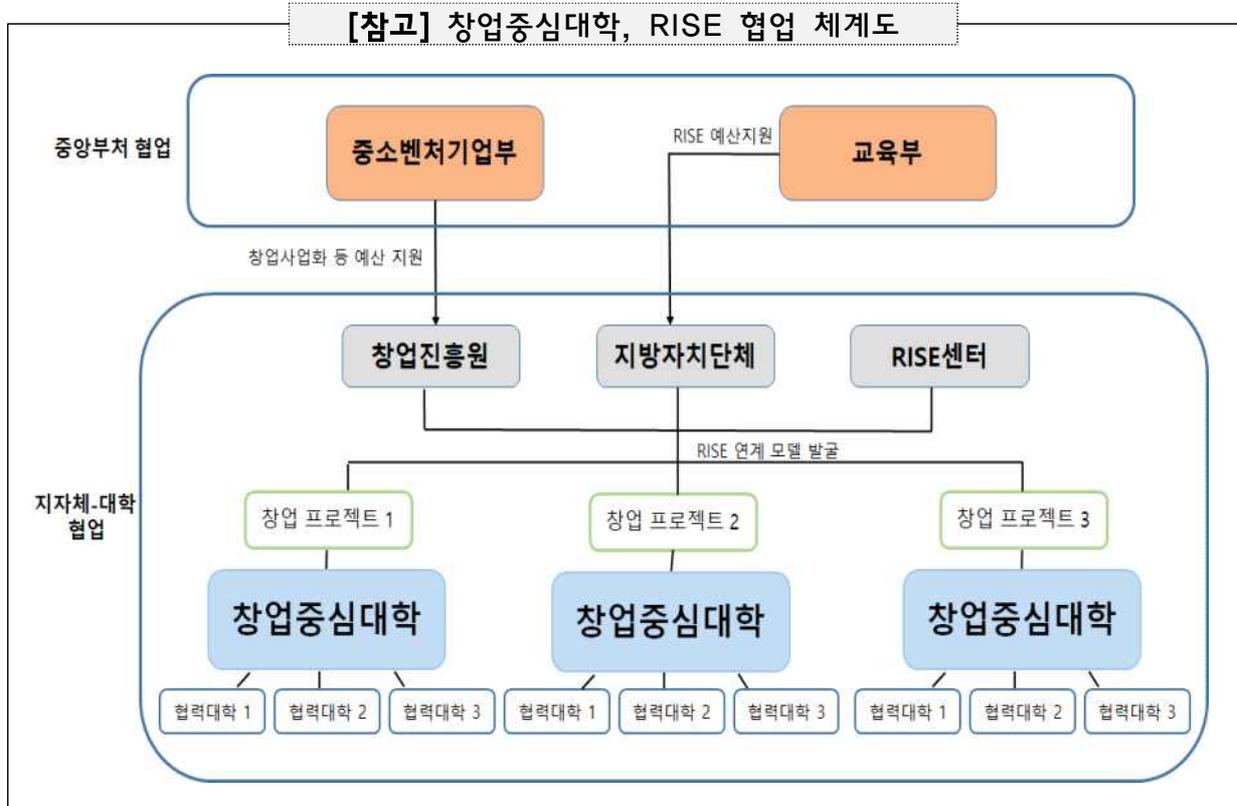
▶ (추진체계) 교육부-중기부-지역 연계를 통해 기업-대학 간 유학생 인력의 수요-공급 매칭, 산업수요 중심의 교육과정 개설, 정주여건 마련 등 종합적인 연계 지원

**7 중기+교육 지역대학 중심 창업지원 : 연계 1유형**

▶ (필요성) 대학은 기술·인력·장비 등 우수한 창업인프라를 보유한 혁신 주체이나, 대학의 지역 창업 거점으로서의 역할 미흡

▶ (내용) 교육부·중기부의 창업지원 연계를 통해 대학 중심 창업지원 추진체계 마련

- 지자체(지역 RISE센터)를 중심으로 중기부·교육부가 지자체별 상황, 대학의 강점 등을 고려한 RISE 연계 모델 발굴 지원
  - [교육부] 대학 내 창업지원(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창업교육 등)과 [중기부]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화 지원(사업화 자금, 기술개발, 인력 등)을 연계한 창업지원체계 마련
  - [중기부] 창업중심대학에 지역별 RISE 연계 프로그램 도입하여 지역 내 타 대학의 RISE 과제와 중심대의 창업지원\*을 연계한 시너지 효과 창출
    - \* 사업화 지원(자금, 역량 강화), 투자유치 지원, 창업 경진대회, 실험실 창업 지원, 네트워킹 등
  - [교육부] 지자체(지역 RISE 센터)에서 프로젝트 기획 시 지자체별 상황, 대학의 강점을 고려하여 대학창업 활성화, 지역 스타트업 육성 관련 창업중심대학 연계 과제 포함
- ▶ (추진체계) 중기부-교육부-지자체 협업을 통해 지역주력산업 등 지자체별 특성에 적합한 창업지원 모델 마련 추진



**8] 고용+교육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 간 연계 강화 : 연계 1유형**

- ▶ (필요성) 지역에 필요한 산업인력 양성·정주의 선순환 구축
  - 산업인력 양성-취업-재직자 교육 지원 간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고용환경 구축, 재직자의 지속적인 직무역량 신장, 지역정주 지원 필요
  - 지역 내 특정 유망·전략산업분야와 뿌리산업 간 일자리 수급 불균형 해소

지원을 위해 산업계의 실제 인력수요를 균형있고 정밀하게 조망할 필요

▶ (내용) ①인재양성 및 취업지원 간 연계 강화, ②지역 내 거버넌스 연계

- 각 지자체별로 ①RISE와 고용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간 계획 수립부터 실제 운영까지 연계하여. 산업인력 양성-취업 및 재직자 교육 지원 간 연결고리 구축

· 지자체는 RISE 계획을 통해 지역 대학의 지역산업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고용부는 지역 대상 사업\*을 통해 취업 이후 정주까지 지원

\* 도약 장려금 지급(지역기업 대상), 임금 보조(근로자 대상), 주거·훈련비 지원 등

· 아울러, RISE 참여자 데이터와 고용보험DB 간 연계를 통해 산업 인력의 수요·공급 간극 해소 및 원활한 RISE 성과관리의 기반 마련

※ 예) 지역 내 RISE 참여자에 대한 고용보험DB 분석을 통해 대학 졸업자의 고용 여건 등을 파악하는 등 지역RISE의 성과를 평가하고, 사업 개선 방향 등 모색

- ②지역 내 RISE 거버넌스(지역RISE위원회)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간 연계

· 지역인자위가 수립하는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 상 훈련 필요 분야 정보를 활용하여 각 지역별 RISE 계획의 수립·보완 가능

※ 예) OO지역 특화산업으로 바이오메디컬·지능형로봇 분야 지정(지역인자위) → RISE 계획 수립 시 특화산업 분야 관련 프로젝트·과제 설계 (지자체·지역RISE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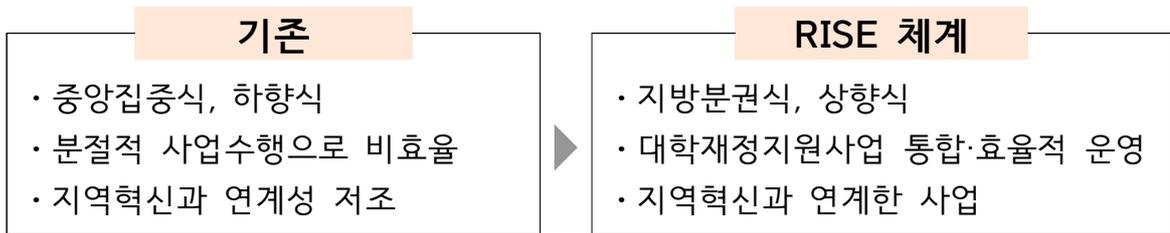
· 지역RISE 운영·발전을 위한 각종 협의체(지역RISE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등) 구성 시, 지역인자위 관계자 풀을 활용하는 등 산업계와의 직접 연계 강화

▶ (추진체계) 지역RISE위원회-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간 정례 협의회 운영 등으로 사업 간 연계분야 발굴 등 향후 발전방향 논의

## 2 계획 수립

### 1 지역별 계획의 종류

- 각 지역별 RISE 관련 계획은 ①RISE 기본계획(5개년), ②연도별 시행계획(세부시행계획 포함)의 크게 두 가지로 구분
- ①RISE 기본계획은 지역발전전략, 지역 대학의 강점·특성화 분야, 지역의 정책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광역지자체 단위로 수립
  - ※ 동 계획은 RISE 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 모니터링, 성과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지자체와 대학의 협업을 통해 지역발전 전략과 대학의 혁신을 연계한 과제를 상향식으로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제안서
- ②연도별 시행계획은 실제 '25년부터 RISE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활용 ※ 지역RISE센터는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 2 중점사항

- (원칙) 각 시도는 대학과의 협력적·수평적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각종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
  - 종전 중앙집중식·하향식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는 반영이 어려웠던 지역의 상황·발전전략·정책 수요 등을 적극 반영한 과제 마련
  - 각 지역의 국·공·사립, 일반대·전문대 등 설립 유형과 대학의 강점·특성화 분야, 대학의 규모 등을 최대한 고려할 필요
  - 중·장기 계획의 취지를 고려, 계획의 중간 변경은 신중해야 하나 환경 변화 등 발생 시 지역RISE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가능
  - ※ 각 시도는 지역RISE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한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

- (범부처 등 연계) '인재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을 위해 RISE를 플랫폼으로 삼아 범부처 및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연계
  -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책무성 범위 확대
    - ※ RISE 지방비 의무매칭(국비 대비 20%) 산정 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매칭비 포함
- (중앙·지역 협업) ①글로벌대학, ②의대 교육혁신, ③늘봄 프로그램 개발, ④산학연협력 분야 '25년 RISE 이관사업(8개) 관련 사항 반영
  - 동 사항들의 추진에는 현장의 수요와 지역발전전략, 전국적 동시 시행 필요성 등의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여 RISE 체계에서 수행

**<중앙·지역 협업영역 과제 관련 주요 사항>**

구분	주요 사항
글로벌대학	▶ 지역 내에서 혁신을 이끄는 우수모델 제시 및 전파
의대	▶ 지역정주형 의사 양성을 위한 의대 선발, 교육과정 개선 등
늘봄	▶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강사 연수 등
8개 이관사업	▶ 산학연 협력 분야 사업들로 '25년 이행기를 거쳐 '26년 통합 예정

※ 의대 교육혁신지원, 늘봄 프로그램 지원 세부사항은 기본계획 별도 안내

- ①각 지역별 라이즈 체계에서 글로벌대학의 혁신 전파 역할·방향, 글로벌대학 실행계획서상 시·도의 지원사항 등을 서술
- ②의대 교육혁신지원은 정원이 증원된 32개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하여 지역정주형 의사 양성을 위한 계획 마련
  - 계획 우수성, 정원 증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인센티브 부여
- ③지역 협력기반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은 지자체와 대학·교육청 간 협력으로 현장 수요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공급 등 진행
  - 늘봄학교 프로그램 전반의 질 제고 및 지역 간 편차 감소를 위해 전 시도의 계획에 반영을 권장하고, 우수 시도에 인센티브 제공
- ④'25년은 사업체계에 지역RISE센터를 포함하고, 지역RISE센터는 각 지역별 예산집행·성과관리 수행, 중앙RISE센터는 중앙단위의 예산집행·성과관리 등 사업관리 총괄 → '26년 RISE 완전 통합

※ 사업수행 관련 세부사항은 8개 사업별 '25년 기본계획에 반영 예정이며, '26년 이후에도 RISE체계에서 지역자율영역 과제와 연계하여 당초 계획기간까지 지원

**<8개 내역사업의 RISE 시행 이후 사업체계(안)>**

'25년 사업 체계	'2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 형태 : <b>출연금</b></li> <li>▶ 사업 관리 체계                             <div style="margin-left: 20px;"> </div> </li> </ul> <p>- 예산은 전담기관 및 지역RISE센터를 거쳐 지역 내 사업참여대학으로 교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 형태 : <b>자치단체 경상 보조금</b></li> <li>▶ 사업 관리 체계                             <div style="margin-left: 20px;"> </div> </li> </ul> <p>- 중앙RISE센터에서 사업 지원기능 수행 - 예산 집행 시 기존 전담기관 미경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적용사항 : <b>지역별 RISE 5개년 계획에 통합추진사업의 주요 내용* 명시</b></li> </ul> <p>* 지역별 지원대학, 사업 기간, 예산 규모, 사업 내용 등</p>	

**< 지역 RISE 계획 수정방향 >**

<현행 목차>	<변경 목차(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현황 및 진단</li> <li>2. RISE 비전 및 목표</li> <li>3. 프로젝트 세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이 자율로 구성하는 사업계획</li> </ul> </li> <li>4. 재정투자 계획</li> <li>5. 성과관리 계획</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장. 가칭 지역자율영역 (좌동)</li> <li><u>II 장. 가칭 중앙·지역 협업영역(신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①) '글로벌대학'의 지역 내 혁신 전파 방향, 시도의 글로벌대학 지원사항 등</li> <li>-예②)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의 지역 내 참여 대학, 해당 대학의 수행 내용, 지원 예산 등 명시</li> </ul> </li> </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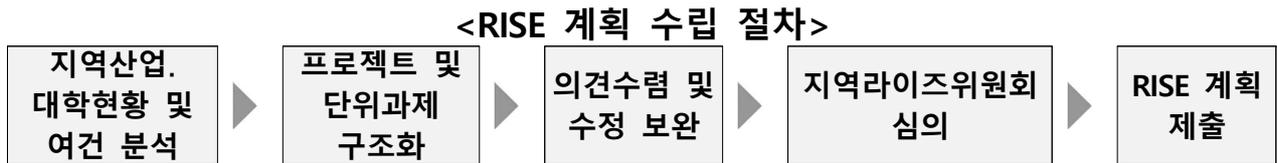
- **(초광역)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 시 타 지역 대학·기업·혁신기관 등과 자유롭게 연계하는 초광역 과제 수립 권장
  - 초광역 과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제를 공동 추진하는 지자체 간 협의회 구성 가능 (예 :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 **(기존 사업 통합 방향)** RISE로 통합되는 5대 재정지원사업(RIS, LINC, HiVE, LiFE, 지방대활성화)은 원칙적으로 폐지 및 재설계되나,
  - 교육과정을 이수하던 학생들의 학위 취득 등 지속 지원필요가 큰 사업 내용의 경우, 지역별 RISE 계획에도 반영할 것을 권고

### 예시

- 운영 예정기간이 1년 남아있던 RIS 초광역플랫폼 A의 공유대학 사업은 RISE 체계에서도 최소 1년은 유지하고, 사업 성과를 고려하여 연장 가능

※ 기 안내된 통합사업 외 향후 RISE 추가 통합사업이 있는 경우 RISE계획 변경 가능

## 3 계획 수립 절차



### ① 지역산업·대학현황 및 여건 분석

- 지역발전전략 검토, 지역산업 및 지역주민 등의 실수요 조사·분석
  - ※ 지역주력산업 및 미래핵심 산업, 기업 필요 인력, 역량 등 종합분석 검토 필요
  - 기존 재정지원사업(RIS, LINC, HiVE, LiFE, 지방(전문)대학성화 사업 등)을 통해 구축한 지역 내 대학의 강점 및 특성화 사항을 분석
    - ※ 대학으로부터 자료 제출, RISE센터 등을 통한 기초자료 분석
  - 타 지역 및 타부처 연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조사

### ② 프로젝트 및 단위과제 구조화

- RISE 추진 비전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및 단위과제를 구조화하고, 시도별 RISE 계획 초안을 마련
  - ※ 기획단계부터 지역대학, 지역기업 등 의견수렴으로 수평적 관계 유지

### ③ 의견수렴 및 수정 보완

- 시도 RISE 계획 초안에 대해 지역의 대학, 산업계 등 의견수렴을 거치고, 전문가 컨설팅 추진을 통해 시도 RISE 계획 수정 보완

### ④ 지역라이즈위원회 심의·의결

- 지역라이즈위원회\*를 통한 RISE 계획 심의 및 조정
  -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고등교육법」 제·개정 전이라도 각 지역은 동 규정(안)에 따른 지역라이즈위원회 조기 구성을 권고하나, 「지방대 육성법」 제19조 또는 제21조의 협의회(위원회)를 통한 심의·조정도 인정

### ⑤ 지역 RISE 계획 제출

- 지자체장이 교육부장관에게 시도 RISE계획 제출

#### 4 프로젝트 및 과제 구성

- 지역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RISE 기본계획의 비전·목표들이 모여 RISE의 전체적인 성과목표와 비전을 구성

<4대 성과목표(예시)>

①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②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③ 직업·평생교육의 혁신	④ 지역현안 해결

- 각 지역은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프로젝트(4개 내외) 및 프로젝트별 단위과제를 주도적으로 구성
- ※ 프로젝트 명칭·개수, 프로젝트 내 단위과제 개수는 지역에서 자유롭게 조정 가능

<시도별 RISE 계획 수립(예시)>



#### 3 사업 운영

<참고 : RISE 체계에서 전문대학의 역할과 참여방안>

① 전문대학의 특성

- 전문대학은 단기 학제, 취업 중심 교육과정으로 실무기술인재 양성, 지역의 평생직업 교육거점 등 고유의 강점을 가진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기능
- ※ 전문대졸 인력은 지역산업의 중요한 부분인 중소기업 인력의 약 72% 차지(23.)

※ 전문대-일반대 상생모델(예시)

- 고유한 특성으로 전문대와 일반대가 역할을 분담하는 컨소시엄을 통한 상생모델 구축의 예시

Ⅰ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에 따른 역할분담(예시) 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기본원리 발견	기술 개념과 적용분야 확립	분석과 실험을 통한 기술개념 검증	연구실에서의 Working Model 개발	유사환경에서의 Working Model 검증	유사환경에서의 프로토타입 개발	실제환경에서의 시제품 데모	상용제품 시험평가 및 신뢰성 검증	상용제품 생산

대학원영역(기초연구) 1~4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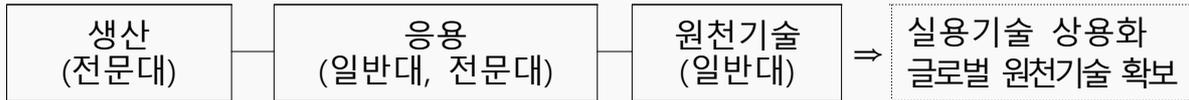
일반대학 영역(응용기술) 4~7단계

전문대학 영역(실용기술) 6~9단계



Ⅰ 전문대-일반대 컨소시엄(예시) Ⅰ

<기업>



② RISE 성과목표별 전문대학의 역할 개요

RISE 성과목표(예시)	전문대학의 역할 개요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 지역특화산업 분야에 맞는 실습교육을 통해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지산학연 협력생태계 구축	▶ '지역사회-전문대·일반대-산업체·연구소' 등 지역 내 지산학연 주체들의 협력을 위한 가교기관
직업·평생교육 혁신	▶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사설 교육기관·학원 등과는 차별화되는 평생·직업교육 시행
지역현안 해결	▶ 생활밀착형 지역현안문제의 지속 발굴과 해결 프로그램 운영

③ RISE 성과목표별 단위과제 운영(예시)

-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바이오·헬스케어 특화지역과 연계한 인재양성
  - **(목표)** 바이오·헬스, 의료IT 특화지역의 기업과 연계하여 대학의 특화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전문대 산학협력 모델 구축
  - **(예시)** ①산업체 장기현장실습학기제 등 교육과정 운영→②대학 ICC 중심 산업체 맞춤형 인력 공급체계 및 창업생태계 구축→③지자체의 취업생 정주지원
- **(지산학연 협력생태계 구축)** 지역 R&D 연구보조 전문인력 육성
  - **(목표)** 기업의 R&D 연구 전문인력 외 R&D 보조인력을 집중 육성
  - **(예시)** ①PBL 기반 기초·전문역량 강화→②지역산업체와 전문대학 간의 MOU를 통한 장기Co-op 프로그램 지원→③기업 R&D 보조인력 채용
- **(직업·평생교육 혁신)** 디지털 융합 평생교육 직업훈련
  - **(목표)** 중장년층에 대한 재교육으로 취창업 연계 직무전환 지원
  - **(예시)** ①학내 창업공간에서의 중장년층 DX 교육과정 운영→②전문자격 취득 및 창업 실전 교육→③맞춤형 취업 지원 및 창업인큐베이팅→④장년층 재취업 지원금 등 지자체 정주지원 연계
- **(지역현안 해결①)**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의 ‘상호문화도시’ 조성
  - **(목표)** 상호문화가정 자녀의 학습역량과 가족 전체의 적응 지원
  - **(예시)** ①지역 내 협력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언어교육, 박물관·문화센터 견학 프로그램, 진로직업체험 기회 확대, ②전문대 교원의 상호문화가정의 학부모에 대한 ‘부모교육 워크숍’ 등
- **(지역현안 해결②)** 지역특화 외식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 **(목표)** 지역발전 프로젝트(외식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 **(예시)** ①지역 농산물 이해 및 실습 및 관련 이론→②지역 농가 협력, 외식산업 축제 기획, 창업 인큐베이팅→③지역 외식산업체 장기Co-op→④지역 창업 및 정주

#### ④ 기대효과

- RISE 체계에서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은 지역정주인력 육성,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으로 이어져 지역과 산업, 대학의 동반성장에 기여

### ① 개요

- **(운영주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 각 지역대학, 기업, 지역협의체 등이 협력하여 운영

○ (사업기간) 2025년 3월 ~ 2030년 2월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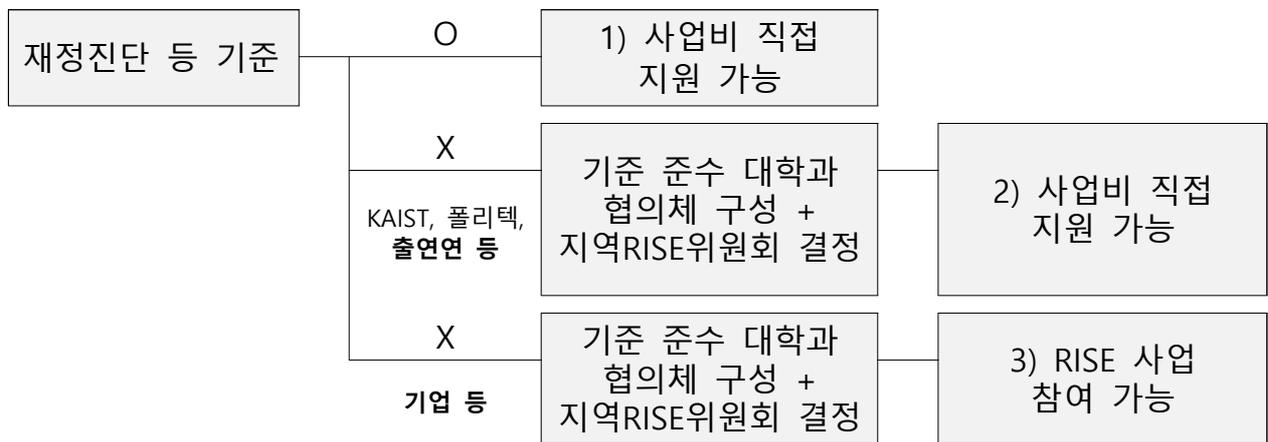
※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지역별 대학 선정·공모는 사전에 수행 가능

○ (지원대상) ①「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기관평가인증\*(조건부 인증 이상)을 받은 학교 및 재정진단\*\* 결과 재정건전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 일반대·전문대 기관평가인증, 원격대학 인증·역량진단,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 단,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은 사립대학에만 해당(25년부터 재정진단을 희망하는 원격대학, 대학원대학, 각종학교 등은 재정진단 이후 단독지원 검토)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안)」 별표 1 지원대상의 범위 >



- ②기관평가인증 또는 재정진단의 미적용 대상(폴리텍·출연연 등) 이거나, 통과하지 못한 학교의 경우에도 지역의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①의 대학과 협의체 구성 후 지역RISE위원회 결정 시 사업비 지원 가능

※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방안(23.3.)의 '지자체' 재정지원사업은 RISE를 포함

예시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상 기능대학(폴리텍)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RISE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지원 대상으로 심의·의결을 받은 경우 RISE 사업비(국비+지방비) 지원 가능

- ③기업 등의 경우에도 ①의 학교와 연계하여 사업 참여는 가능하나, 사업비 직접 집행은 불가

○ (지원범위) 광역지자체 내 소재 대학 지원

- 대학 본교와 캠퍼스가 다른 광역시도에 소재할 경우, 캠퍼스 소재지 시도가 캠퍼스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교 소재지 시도 또한 캠퍼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역RISE계획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타 시도 소재 대학도 지원 가능

예시
○ “가 대학 본교”는 “A시”에 소재하고, “가 대학 캠퍼스”는 “B도”에 소재할 경우 - “B도”에서 “가 대학 B도에 소재한 캠퍼스”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 - “A시”가 본교와 연계한 캠퍼스 지원 필요성이 있어 캠퍼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B도에 소재한 캠퍼스” 지원 가능

○ (초광역권) 지역대학의 경쟁력 향상, 사업의 효과성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초광역 과제 수립 가능

○ (예산 지원) 「보조금법」 의거,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②~⑨ 내역은 출연금)

- 각 지자체는 시도별 국비 지원규모 대비 최소 20% 이상 의무매칭
- RIS 등 통합사업의 지역별·대학별 수주액 비율, RISE 계획 및 체계 구축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 예산 배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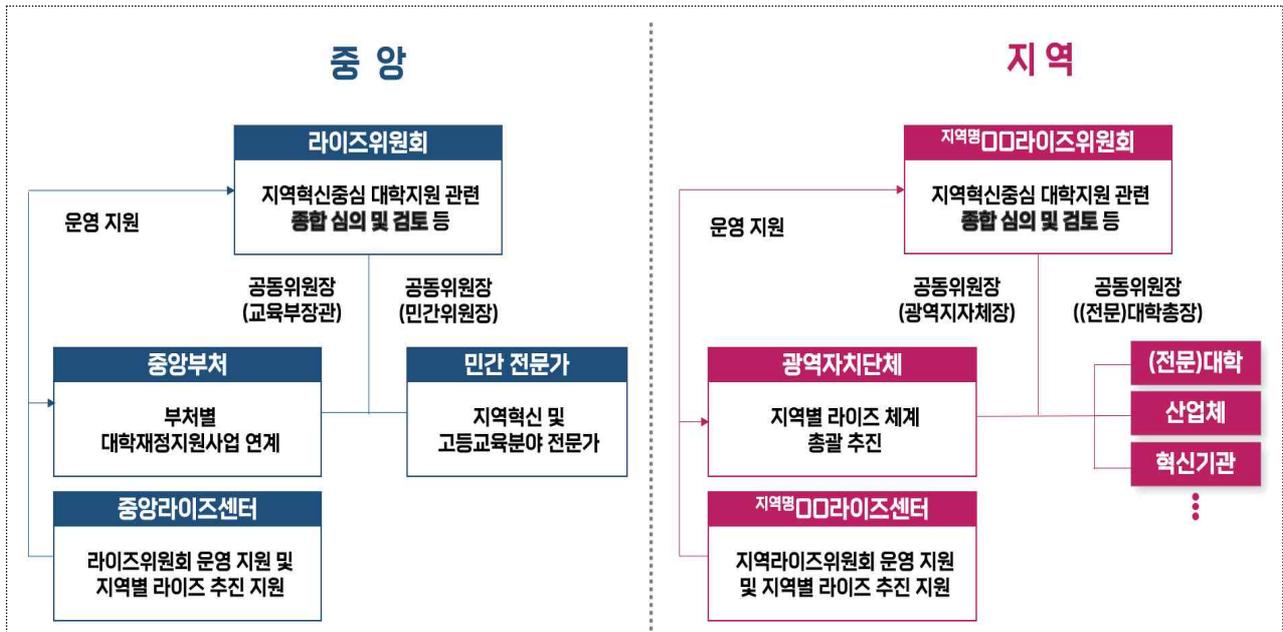
<시도별 예산배분기준>

① 대학역량 기반		②지역역량 기반
지출 재구조화 대상 사업 참여 대학 수주율	+ 글로벌대학 지원액	▶ 의대·늘봄 지원 ▶ RISE 계획 및 체계 구축·운영 우수 지자체 ▶ 시도 매칭률 및 시범지역 성과

<'25년 RISE 정부 예산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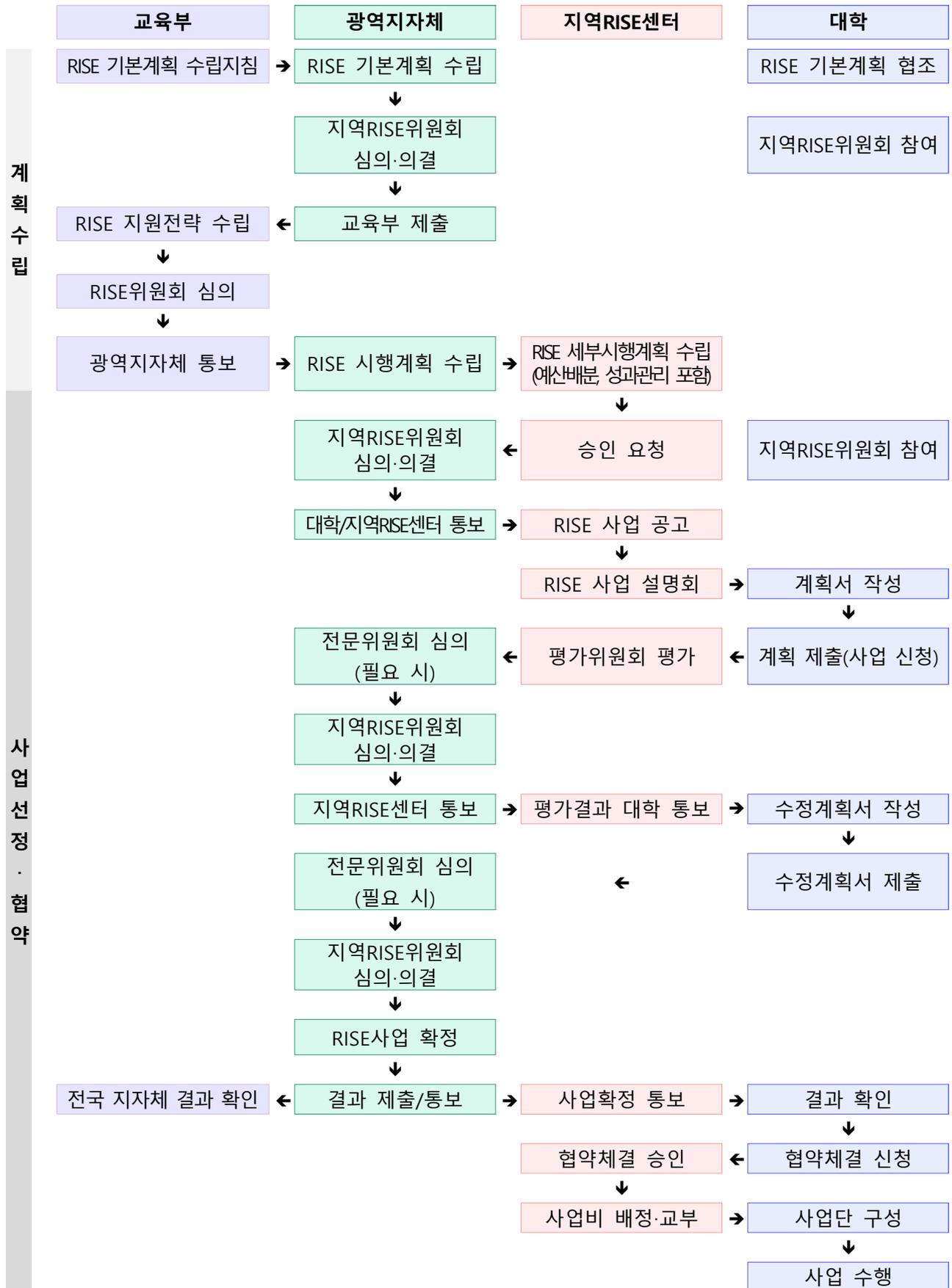
사업명		예산 (억원, '24.)	정부안 예산(억원, '25.)
<b>세부사업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b>		<b>12,025</b>	<b>20,010</b>
내역 사업	①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12,025	17,047
	②첨단분야 혁신 융합대학	2,010	2,010
	③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258	258
	④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96	96
	⑤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210	210
	⑥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	140	140
	⑦마이스터대 지원	151	47
	⑧신산업분야 특화 선도형(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142	142
	⑨대학 창업 교육체제 구축	60	60

## 2 사업 운영 주체별 역할 구성



구분	기관	기능 및 역할
지역	지역RISE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RISE 전반(체계·계획·사업 등)에 관한 심의·의결</li> <li>지역 RISE센터 지정·취소 심의 등</li> </ul>
	광역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ISE 계획 수립 및 프로젝트·단위과제 구성</li> <li>지역RISE센터 운영 지원 및 제도 정비</li> <li>지역RISE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li> <li>시도 프로젝트 및 단위과제 성과관리 총괄</li> </ul>
	지역 RISE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 RISE 계획 수립 지원</li> <li>RISE 프로젝트 및 단위과제 관리(공모, 지정)</li> <li>대학에 국고보조금 예산 교부·집행 관리, 성과관리 등</li> <li>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 지역RISE위원회 운영지원</li> </ul>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ISE 프로젝트 및 단위과제 제안</li> <li>RISE 계획에 따른 프로젝트 및 단위과제 수행</li> <li>산업체, 혁신기관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li> </ul>
중앙	RISE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단위 RISE 전반(체계·계획·사업 등)에 관한 심의·의결</li> <li>중앙 RISE센터 지정·취소 심의 등</li> </ul>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ISE 지원전략 수립</li> <li>국고보조금 예산 확보 및 시도별 예산배분</li> <li>시도 성과관리·모니터링 등 총괄</li> <li>규제특례 사항 검토</li> </ul>
	중앙 RISE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역지자체 및 지역 RISE센터 교육</li> <li>시도 RISE 성과관리 및 평가, 사업모니터링 및 데이터 관리</li> <li>교육, 워크숍, 컨설팅 등 지원, 라이즈위원회 운영 지원</li> </ul>

### 3 사업 수행절차 (순서도)



※ 동 순서도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안)」 기반 예시

④ **사업 운영 세부사항** ※ 예산 교부, 사업비 집행·관리 등은 「보조금법」 기반 진행

① 사업의 위탁

- 시·도 지사는 지역 RISE센터에 RISE 사업예산과 사업관리 예산을 교부하고, 지역RISE센터에 사업 운영 전반을 위탁
- 지역RISE센터는 시·도가 수립한 RISE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RISE위원회가 심의·의결

② 예산 교부 방식

- 지역 주도의 사업 추진 및 중앙 정부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방식으로 지원

※ 경상보조 목에서 벗어나는 항목은 지출 불가(사업비 편성 항목 참고)

<b>교육부</b>	
RISE 지원전략 수립, 보조금 집행 총괄 관리 시도 대상 성과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실시 등 사업비교부 ↓ ↑ 결과보고	중앙관서
<b>지자체</b>	
사업계획 수립, 자체 성과평가 실시 등 사업비교부 ↓ ↑ 결과보고	보조사업자
<b>지역 RISE센터</b>	
사업비관리, 사업 공고, 선정평가 및 성과관리 사업비교부 ↓ ↑ 결과보고	간접보조사업자
<b>대학</b>	
사업수행	간접보조사업자

③ 사업비 편성·관리·집행

- 각 지자체는 직접적 지방비 투입 이외에도 기타 간접 지원금\*도 최대한 확보하여, 대학 재정지원 규모 증가 효과 창출 도모

\* RISE 예산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타부처의 대학 관련 재정지원사업, 대학에 대한 기업의 투자금 등 지자체가 직접투자하는 지방비 이외 확보할 수 있는 자금

- 예산 집행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산학협력단회계 또는 대학회계 중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각 대학 총장이 RISE 사업비를 총괄 관리

○ 사업비 교부 및 집행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별표 2 : 사업비 편성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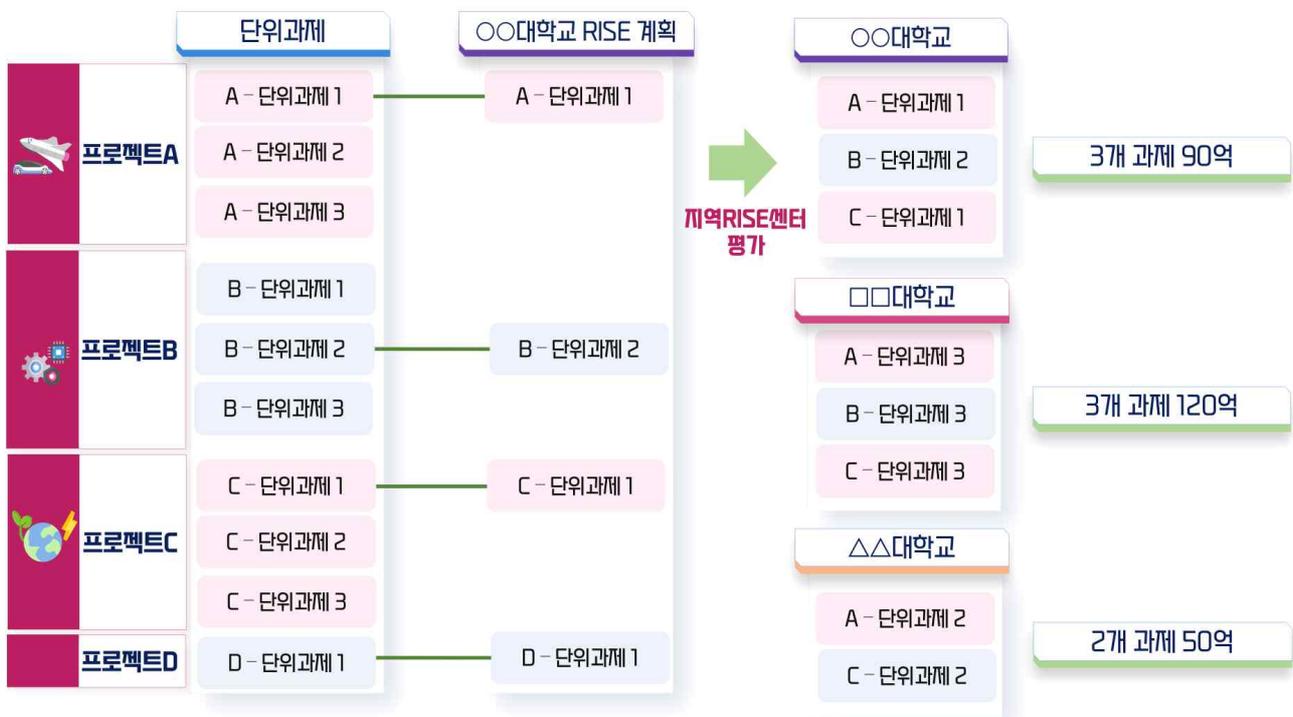
항목	사용용도
인건비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교원 및 직원 등 인력의 인건비 비용(퇴직금, 4대 보험료, 보직수당, 성과급 포함) 2) 그 밖에 RISE사업 운영을 위한 조교 등 보조인력에 대한 보수
장학금	1) RISE사업 관련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자 보조금 2) RISE사업 관련 (전문기술)석사·박사학위과정 학생 및 수료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자 보조금 3) RISE사업 관련 그 밖에 성인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 보조금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1)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비: 전공·비전공·교양 등 신규 교과목 개발, 신규 교재개발, 신규 강의법 개발 등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 2)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비: 정책연구비, 강의료, 원고료, 교육학술활동비, 실험실습비 등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국제화 경비: 국제화를 위한 교류 경비,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 국외 교육·연구활동 관련 각종 경비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1) 강의실·실험실·실습실 등 RISE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연구공간에 대한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2) 시스템 구축 용역비 또는 시스템 관련 기자재 구입 등 RISE사업에 부합하는 교육·연구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교육·연구·산학협력 목적으로 활용되는 실험·실습·시험·분석·계측·생산장비 및 기자재의 구입·리스·임차·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지역 연계·협업 지원비	1) 기관 간 연계·협업 활동, 지·산·학·연 정보 공유,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설계·운영 등 지자체 또는 지역 내(간) 기관과의 연계·협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문제 해결 등에 필요한 비용
기업 지원·협력 활동비	1) 산학공동 기술·지식 개발비: 산학 공동 기술·지식 개발 비용 2) 산학협력·직업평생교육활동비: 애로기술 및 컨설팅 지원, 재직자 교육, 융·복합 기술사업화 등 기업·지역·협력기관 지원 비용, 산학연계 공동 세미나·포럼 추진·참가비 또는 산학협력·직업평생교육협의체 운영비 등 산학협력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성과 활용·확산 지원비	1)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 사용료 등에 필요한 비용 2) 기술이전·사업화 비용: 창의적 자산 발굴 및 기획비용, 산학공동 기술·지식 사업화 비용(시제품 제작 및 검증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비, 사업화 분석 및 투자유치, 대학·협력기관 간 기술사업화 융·복합 프로그램 추진비, 학생 기술지식 창업 프로젝트 비용 등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비용 3) 성과 공유·확산비: 세미나·포럼 개최비, 위원회 수당 등 지·산·학·연 협력 성과 공유·확산을 위해 필요한 비용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여비, 교육활동지원비, 도서 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신규 채용인력 공개임용 시 필요 경비 등 RISE사업 관련 교육·연구·산학협력 등의 활동 수행 시 부가적으로 필요한 비용
간접비	교육연구단, 산학협력단 등 RISE사업의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

※ RISE 사업비는 대학 내에서 사업과 관계 없는 인건비 또는 경상운영비로 사업 불가하며, 인건비·간접비 등 최대 사용가능 비율 등은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으로 추후 안내

- 지역 RISE센터는 대학이 수주한 단위과제 예산의 총액을 대학에 교부하고, 대학은 단위과제별 칸막이 없이 예산 활용
- 대학은 지역의 RISE 계획에서 제시된 단위과제 예산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해당 과제의 자율성과지표는 달성 필요
- ※ 대학은 예산 변경 내역에 대하여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역RISE센터에 보고

## 5 사업수행 대학 선정

< 사업 수행 대학 선정 구조도(안) >



- (원칙) 지역 RISE센터는 단위과제별 공모가 아닌 '00시/도 RISE 사업' 이라는 단일사업, 패키지 형태로 공모
- 각 지역은 프로젝트·과제 특성 및 지역 여건, 학교수 등을 고려해 단독형, 대학 간 또는 기업·연구기관 등 참여 협의체(컨소시엄)형 등 설계 가능
- ※ 지역 판단으로 대학별 신청 가능 과제 수 제한 가능(통합 예정 대학은 '24년 9월 기준으로 산정)
- 사업 목적·내용 및 수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가 어려운 경우는 지역라이즈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으로 추진 가능
- ※ 지정 추진 과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만 추진할 것을 권장

- 대학이 신청한 과제를 기초로 평가·선정이 이루어지므로 **공모 신청 과정에서 누락되는 단위과제가 없도록** 공모 방안 설계 권장
    - ※ 누락된 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재공모 또는 지역RISE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 누락된 단위과제의 내용 변경, 삭제 등 RISE기본계획 변경 가능
  - **(대학의 신청)** 지역별 전체 단위과제 중 대학이 추진할 단위과제들을 패키지로 선택하여 '00대학 RISE 계획'라는 **단일 신청서** 제출
    - 대학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특성화 분야**에 맞게 **유기적으로 연계 가능한 과제들**을 선택하여 신청
  - **(선정절차)** 지역RISE센터는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위원회는 대학별 신청서 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지역RISE위원회에 상정하고, 지역RISE위원회는 필요 시 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평가 결과 심의·의결**
    - 평가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공정성** 등을 유지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유의
    - 지역RISE센터는 평가위원 구성 시, **위원의 절반 이상을 중앙 RISE센터가 제공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문가**의 활용 필수
    - RISE로 통합되는 5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종합평가, 연차평가 등)**를 대학 공모 심사 시 반영\* 권장
- \* RIS·LINC 등 RISE 통합 5대 대학재정지원사업은 RISE의 성과목표와 연결되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과제에 대한 대학의 수행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능

**<선정절차도(안)>**



※ 공모·선정절차별 상세 내용은 선정평가 매뉴얼을 통해 별도 안내

## 4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운영

### 1 성과관리 구조

◆ 지자체의 자체평가(지자체→대학)를 기본으로 하고, 교육부는 연차점검 및 중간·종합평가를 통해 지역별 성과 점검 및 환류(예산·컨설팅) 실시

< RISE 성과관리체계도 >

평가흐름	분류	사업수행 연도					평가 내용	평가 방식
		1년	2년	3년	4년	5년		
자체 평가 지자체 (지역RISE센터) → 대학	자체 평가	○	○	○	○	○	· (목적) 대학별 단위과제 진행상황 점검 · (지표) 자율성과지표	자율
시·도 대상 점검·평가	연차 점검	○		○	○		· (목적) RISE 진행상황 및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 · (지표) 지역별 자율성과지표 달성도 및 추진 적절성	정량 + 정성
교육부 → 지자체	중간 · 종합 평가		중 간			중 합	· (목적) 지역별 성과 점검 · (지표) 자율성과지표 달성도 및 핵심성과지표 성장률, 지역별 RISE 추진과정	

\*각 평가는 해당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실시(예: 중간평가는 2차년도 종료 후 실시)

- (자체평가) 지역에서 설정한 자율성과지표를 바탕으로 평가 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지역 및 대학의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 및 환류
  - (평가 주체) 평가의 공정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역RISE센터가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 평가위원의 절반 이상은 중앙RISE센터가 제공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문가를 활용
  - (방법) 지역별 평가 계획에 따라 연차평가 외 중간·종합평가 실시 여부 및 평가 방법(정성·정량), 환류 방안(예산 배분 등) 등을 결정하여 추진
  - (지표) 지역에서 자체 설정한 자율성과지표
  - (시기) 매년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자체평가를 실시
    - ※ 평가 일정(매년) : 사업 종료(2월) → 성과평가 실시(3~5월) → 상위 점검·평가(6~8월)
- (시도 점검·평가) 지역별 자율성과지표를 바탕으로 RISE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교육부에서 제시한 **핵심성과지표**를 통해 지역별 성과 확인

- **(평가 주체)** 교육부(중앙RISE센터)는 지역·대학 전문가로 별도의 점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방법)** 연차점검은 서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중간·종합평가 시에는 서면·대면평가 병행,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 배분 등 환류
  - ※ 평가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배분 방식은 별도 계획을 통해 안내하되, 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 정도는 연차점검 < 중간평가 < 종합평가 순으로 증가
- **(지표)** 지역별 자율성과지표 달성도와 자체평가 적절성을 매년 점검하고 중간·종합평가시에는 핵심성과지표 및 RISE 추진과정 평가도 실시

**< 평가지표 구성(안) >**

지표 분류	지표명	
핵심 성과지표(안)	① 지역별 대표과제의 성과목표 달성률	② 지산학연 협업 실적 증가율
	③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실적 증가율	④ 지역정주 취업 증가율
	⑤ 지역혁신체제 만족도 증가율	⑥ 대학의 지역 경제 영향력 증가율
RISE 추진과정 평가항목(안)	① 예산 확보·집행 등 사업 운영, 성과관리의 적절성	
	② 거버넌스 구축·운영의 적절성	

- **(시기)** 매년\* 지역별 자체평가 종료 후 **2개월 이내** 실시
  - ※ 평가 일정 : 사업 종료(2월) → 자체평가 실시(3~5월) → 연차점검 실시(6~8월)
  - \* 단,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2년차, 5년차 연차점검은 중간·종합평가에 통합하여 실시

**< 연차·중간·종합평가 시기 >**

연차	사업기간	연차점검	중간·종합평가	환류 방안
1차년도	'25.3월 ~ '26.2월	(연차)'26.6~8월	-	차년도 예산반영
2차년도	'26.3월 ~ '27.2월	중간평가에 통합	(중간) '27.6~8월	차년도 예산반영
3차년도	'27.3월 ~ '28.2월	(연차)'28.6~8월	-	차년도 예산반영
4차년도	'28.3월 ~ '29.2월	(연차)'29.6~8월	-	차년도 예산반영
5차년도	'29.3월 ~ '30.2월	종합평가에 통합	(종합) '29.12월	2주기 RISE 반영

**② 성과지표(핵심·자율) 구성**

◆ **지역**은 지역RISE의 성과관리를 위한 **자율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교육부**는 지역의 중장기 성과를 종합 검토할 수 있는 공통의 **핵심성과지표**를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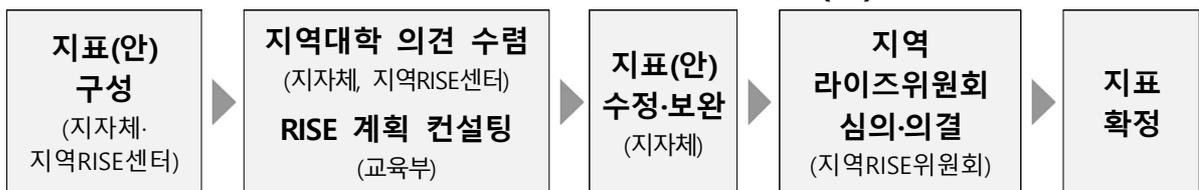
- **(자율성과지표)** 시도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관리하는 성과지표로 지역RISE의 비전·목표 달성을 위해 시도가 자체 개발한 지표 활용
  - **(구성)** 단위과제의 성과 측정을 위해, 사업 수행과정, 사업결과 및 효과에 대해 자체 점검(모니터링, 평가)이 가능한 지표로 구성

**< RISE 자율 성과지표 구성(예시) >**

	프로젝트	단위과제	자율성과지표
A 지역 RISE 계획	프로젝트 '가'	과제 1	창업교과 이수학생 비율
			대학생 창업 건수
	과제 2		대학창업기업 판로 지원액
			대학생 창업 건수
...	...	...	

- **(선정절차)** 지역별 RISE 계획 수립 시, 시도와 대학이 함께 지표를 마련하고, 지역라이즈위원회 심의·의결로 **자율성과지표** 확정
  - ※ 대학 측의 평가 부담 완화 및 평가 자료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가급적 대학 정보공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

**< RISE 자율 성과지표 선정 절차(안) >**



※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성과지표·목표를 변경하는 경우, 지역RISE위원회 심의·의결 필요

- **(지표 선정기준)** 사업의 우선순위, 내용을 고려하되, **궁극적으로 발전시킬 지역의 고등교육 분야**의 지표를 선택하며 **지표별 지역 내 과거 추세치·전년도 실적·국정과제** 등을 고려한 발전된 목표치 설정
  - ※ 기준값은 전년도 실적 또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실적 등 합리성을 기반으로 설정하고 목표치는 매년 증가(우상향)하는 수치로 산정

- **(핵심성과지표)** 교육부가 제시하는 정의·산식에 따라 모든 시도가 공통으로 RISE 취지 달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지표

핵심성과지표 구성(안)
① 지역별 대표 과제의 성과목표 달성률
② 지산학연 협업 실적 증가율
③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실적 증가율
④ 지역 정주 취업 증가율
⑤ 지역혁신체제 만족도 증가율
⑥ 대학의 지역경제 영향력 증가율(IMPACT 평가)

※ 핵심성과지표 세부 산식 등은 2025년 상반기 중 별도 안내 예정

- **(구성)**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대표과제의 성과지표(①)와, RISE의 비전·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지역 공통의 결과지표(②~⑥)로 구성
- **(평가방법)** 각 지역별 교육·경제적 여건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공통 지표(②~⑥)는 기준연도 대비 증가율, 대표과제지표(①)는 달성률 평가
- **(평가활용)** 핵심성과지표는 중간·종합평가시에만 평가지표로 활용
- ※ ④~⑥ 핵심성과지표는 종합평가시에만 활용
- **(RISE 추진과정 평가)** 중간·종합평가 시 지자체-대학 간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및 예산 확보·집행 등 추진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정성평가 실시

### ③ 지역 RISE 계획 컨설팅

- **(추진 목적)** 시도별 점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RISE 계획 및 시행체계의 질 제고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 실시(필요시)
- **(추진 시기)** : 상위 점검·평가(연차·중간·종합) 결과 안내 후 9~12월 중
- **(추진 절차)** : ① 컨설팅단 구성 → ② 지역별 컨설팅 질의서 제출 → ③ 컨설팅단 사전 회의 → ④ 지역별 방문 컨설팅



- **(컨설팅 내용)** RISE 추진목표 및 프로젝트별 중점 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 및 세부 추진내용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자문

---

## IV. 향후 추진 일정(안)

---

□ RISE 계획 및 체계 구축·운영 우수 지역 선정 (~'25.1.)

※ 선정 결과는 RISE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 지역별 RISE 수행대학 공모 및 사업 추진 ('25.1분기.~)

※ 지역별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 지역별 사업수행 대학 공모 및 선정 → 대학별 사업 개시

□ 지역별 자체평가 등 사업 평가 및 환류 ('26.~)